

제334회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5년6월15일(월)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5.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3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3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4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8.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9.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5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5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5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5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5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5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심사된 안건

1.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김종태·정미경·정용기·이완영·이종훈·양창영·이노근·김상훈·나성린 의원 발의) 6
2.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설훈·박홍근·박민수·민홍철·배재정·김상희·이찬열·이목희·오제세 의원 발의) 6
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양창영·최봉홍·이한성·김종태·윤영석·경대수·황영철·권성동·박창식·은수미 의원 발의) 6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황주홍·이종훈·서용교·나성린·양창영·이완영·최봉홍·김상민·김종태 의원 발의) 6
5.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이자스민·김우남·인재근·조명철·김상훈·류지영·강은희·이한성·정희수·양창영 의원 발의) 6
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설훈·박홍근·박민수·민홍철·배재정·김상희·이찬열·이목희·오제세 의원 발의) 6
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김상민·염동열·이완영·홍지만·이한성·박윤

- 옥 · 신성범 · 주영순 · 박창식 · 이우현 · 김명연 의원 발의) 6
8.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백군기 의원 대표발의)(백군기 · 김광진 · 윤후덕 · 황주홍 · 김세연 · 송영근 · 우원식 · 이인영 · 안규백 · 김춘진 · 한정애 · 權垠希 의원 발의) 6
9.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 · 설훈 · 박홍근 · 박민수 · 민홍철 · 배재정 · 김상희 · 이찬열 · 이목희 · 오제세 의원 발의) 7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 · 황주홍 · 이종훈 · 서용교 · 나성린 · 양창영 · 이완영 · 최봉홍 · 김상민 · 김종태 의원 발의) 7
11.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 · 설훈 · 박홍근 · 박민수 · 민홍철 · 배재정 · 김상희 · 이찬열 · 이목희 · 오제세 의원 발의) 7
12.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 · 이미경 · 유은혜 · 김기식 · 이인영 · 민병두 · 이춘석 · 노용래 · 정호준 · 김성주 · 최민희 · 박남춘 · 전해철 · 이상호 의원 발의) 7
13.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배재정 · 김관영 · 김상희 · 이개호 · 조정식 · 김광진 · 박홍근 · 정진후 · 김태년 · 박남춘 · 홍의락 · 도종환 · 정청래 · 설훈 의원 발의) 7
14.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 · 설훈 · 박홍근 · 박민수 · 민홍철 · 배재정 · 김상희 · 이찬열 · 이목희 · 오제세 의원 발의) 7
1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 · 이개호 · 진성준 · 민홍철 · 박민수 · 유승희 · 조정식 · 박남춘 · 김우남 · 전해철 의원 발의) 7
16.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 · 양창영 · 이철우 · 송영근 · 유승우 · 박주선 · 박홍근 · 김태흠 · 김윤덕 · 이한성 · 박남춘 · 문병호 · 김제식 · 김상훈 · 김학용 의원 발의) 7
17.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 · 이완영 · 양창영 · 이종훈 · 나성린 · 최봉홍 · 서용교 · 권성동 · 김상민 · 강석호 의원 발의) 7
1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 · 홍철호 · 김정록 · 한선교 · 박대출 · 민병주 · 민현주 · 김제식 · 김도읍 · 이병석 · 문정림 · 김기선 · 염동열 · 박인숙 의원 발의) 7
19.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 · 이미경 · 유은혜 · 김기식 · 이인영 · 민병두 · 이춘석 · 노용래 · 정호준 · 김성주 · 최민희 · 박남춘 · 전해철 · 이상호 의원 발의) 7
2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김성곤 · 김관영 · 이윤석 · 강창일 · 신기남 · 조정식 · 박주선 · 최규성 · 변재일 · 김광진 · 노영민 의원 발의) 7
2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 · 설훈 · 박홍근 · 박민수 · 민홍철 · 배재정 · 김상희 · 이찬열 · 이목희 · 오제세 의원 발의) 7
2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 · 김기준 · 박민수 · 이개호 · 이인영 · 이학영 · 장하나 · 정성호 · 최동익 · 한정애 의원 발의) 7
2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양창영 · 한선교 · 이한성 · 최봉홍 · 경대수 · 민홍철 · 김태원 · 정문헌 · 권성동 · 김종태 · 윤영석 · 박민수 · 황주홍 의원 발의) 7
24.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양창영 · 이한성 · 최봉홍 · 경대수 · 민홍철 · 정문헌 · 권성동 · 김종태 · 윤영석 · 박민수 의원 발의) 7
2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
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 · 은수미 · 이개호 · 조정식 · 정청래 · 박남춘 · 이인영 · 우원식 · 김우남 · 이석현 의원 발의) 7
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 · 황주홍 · 이춘석 · 안규백 · 최동익 · 김광진 · 김성주 · 최재성 · 변재일 · 조정식 · 최민희 · 이찬열 · 이학영 · 이목희 · 전해철 · 주승용 의원 발의) 7
2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김희국 · 류지영 · 황주홍 · 김도읍 · 민현주 ·

| | |
|--|---|
| 권은희 · 박명재 · 김상훈 · 김태호 · 서상기 의원 발의) | 7 |
| 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 · 이원욱 · 이목희 · 김성곤 · 이개호 · 최재성 · 부좌현 · 김기식 · 황주홍 · 이춘석 · 정청래 · 유승희 · 박민수 · 배재정 · 김기준 의원 발의) | 8 |
| 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 · 은수미 · 이개호 · 조정식 · 정청래 · 박남춘 · 우원식 · 이인영 · 김우남 · 이석현 의원 발의) | 8 |
| 3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
| 3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 의원 대표발의)(민현주 · 김명연 · 박성호 · 김희국 · 김정록 · 김제식 · 이종훈 · 이병석 · 유의동 · 권성동 의원 발의) | 8 |
| 3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 · 강기윤 · 김희선 · 박창식 · 김상훈 · 김기선 · 김재원 · 한기호 · 김용남 · 송영근 · 이완영 · 유승우 · 문대성 · 이자스민 · 민현주 의원 발의) | 8 |
| 3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 · 김영록 · 배재정 · 박남춘 · 백재현 · 부좌현 · 오제세 · 이개호 · 이상직 · 이종걸 · 정성호 · 주승용 · 최규성 의원 발의) | 8 |
| 3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김희국 · 류지영 · 황주홍 · 김도읍 · 민현주 · 권은희 · 박명재 · 김상훈 · 김태호 · 서상기 의원 발의) | 8 |
| 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 · 이개호 · 정청래 · 황주홍 · 조정식 · 한정애 · 박남춘 · 최동익 · 부좌현 · 김광진 · 민홍철 의원 발의) | 8 |
| 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 · 송영근 · 강석훈 · 강기윤 · 양창영 · 홍일표 · 이한성 · 유의동 · 황인자 · 강은희 의원 발의) | 8 |
| 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 · 이상직 · 김광진 · 최동익 · 박지원 · 신경민 · 이춘석 · 이찬열 · 이개호 · 주승용 의원 발의) | 8 |
| 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양창영 · 황주홍 · 송영근 · 민홍철 · 김성곤 · 이한성 · 김기준 · 김종태 · 윤영석 · 박민수 의원 발의) | 8 |
| 4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 · 윤후덕 · 전순옥 · 노영민 · 강동원 · 신경민 · 이인영 · 이목희 · 민홍철 · 이상직 · 김승남 · 이개호 · 김기준 · 추미애 · 오영식 · 김성곤 · 최동익 · 박남춘 · 유은혜 의원 발의) | 8 |
| 4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
| 4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임수경 · 김영록 · 조정식 · 박수현 · 도종환 · 김성주 · 최규성 · 정성호 · 최민희 · 박원석 의원 발의) | 8 |
| 4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 · 이개호 · 김우남 · 신경민 · 배재정 · 서영교 · 조정식 · 김윤덕 · 안규백 · 오영식 의원 발의) | 8 |
| 4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 · 안규백 · 이인영 · 신경민 · 우원식 · 박광온 · 이목희 · 은수미 · 홍종학 · 최재성 · 장하나 의원 발의) | 8 |
| 4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 · 설훈 · 박홍근 · 박민수 · 민홍철 · 배재정 · 김상희 · 이찬열 · 이목희 · 오제세 의원 발의) | 8 |
| 4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 · 손인춘 · 강길부 · 정희수 · 정두언 · 함진규 · 정갑윤 · 박대동 · 이만우 · 문대성 · 김우남 · 김승남 의원 발의) | 8 |
| 4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 · 김경협 · 김광진 · 김기식 · 김기준 · 김상희 · 김성주 · 김현미 · 박남춘 · 박홍근 · 배재정 · 신기남 · 오영식 · 우원식 · 이개호 · 이목희 · 이미경 · 이상직 · 이인영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찬 · 인재근 · 장하나 · 전순옥 · 전해철 · 정청래 · 진선미 · 진성준 · 최동익 · 최민희 · 최원식 · 한정애 · 홍종학 의원 발의) | 8 |
| 48.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이자스민 · 정희수 · | |

- 류지영·인재근·박맹우·심학봉·권성동·양창영·김기선·김제식 의원 발의) 8
- 49.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설훈·박홍근·박민수·민홍철·배재정·김상희·이찬열·이목희·오제세 의원 발의) 9
- 5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조정식·부좌현·김광진·김승남·안규백·이개호·김우남·이상직·황주홍·김기준·이인영·노용래·한선교 의원 발의) 9
- 5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이개호·민홍철·김성곤·전해철·황주홍·전정희·유기홍·김기준·정청래 의원 발의) 9
- 5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김광진·김상희·민홍철·박남춘·배재정·우원식·유승희·이개호·이목희·이인영·장하나·정청래·조정식·한명숙 의원 발의) 9
- 5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이개호·최원식·이한성·박지원·서기호·부좌현·최민희·서영교·은수미·이상민 의원 발의) 9
- 5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이찬열·최규성·주승용·이학영·인재근·안민석·전순옥·장하나·박홍근 의원 발의) 9
- 5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대표발의)(황인자·손인춘·이한성·김세연·유의동·권은희·황주홍·김정록·안규백·심재철·박맹우 의원 발의) 9
- 5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설훈·박홍근·박민수·민홍철·배재정·김상희·이찬열·이목희·오제세 의원 발의) 9
- 5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 5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김광진·김제남·박광운·박원석·서기호·이인영·장하나·정진후·한정애·홍영표 의원 발의) 9
- 5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설훈·박홍근·박민수·민홍철·배재정·김상희·이찬열·이목희·오제세 의원 발의) 9
- 6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김춘진·남인순·은수미·이개호·이인영·전순옥·정청래·진선미·한명숙·한정애 의원 발의) 9
- 6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김영록·김종태·민홍철·이종걸·임수경·유성엽·정호준·최규성·홍문표·황주홍 의원 발의) 9
- 62.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권은희·양창영·안효대·정희수·정갑윤·박덕흠·심윤조·이명수·박성호·이만우·강석호·김광림·이종배·김태환·홍철호·장윤석·홍지만·주호영·김정록·김종태·이완영·김성곤·박상은·박창식·이철우·정병국·이강후·김을동·박민수·조현룡·나경원·이병석·홍일표·이노근·황영철·정미경 의원 발의) 9

(14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위원님들과 직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메르스 확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로 메르스가 확산되어 현재 4차 감염이 진행 중이며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도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많은 의료진들이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도 감염될지 모르는 공포를 이분들이라고 안 느끼겠습니까. 지금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과 관계기관 담당자들에게 따가운 시선보다는 따뜻한 격려를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메르스는 지난 5월 20일에 첫 확진환자가 나왔고 확진 후 6일 만에 대통령한테 첫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6월 1일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6월 2일은 3차 감염자가 처음 나온 날입니다.

그런데 의료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환경부는 메르스가 창궐하고 있을 때인 지난 6월 5일에서야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지침을 마련해서 각 지방청에 하달했습니다. 전형적인 뒷북 대책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의료폐기물 지역 간 이동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 매일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기관 종사자들과 접촉하는 수집운반기사들을 통해 바이러스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의 약 30%는 100km 이상 장거리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르스의 진원지인 수도권에서 경북지역 등으로 엄청난 양이 매일 이동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께서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의료폐기물 처리 지침을 최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향후 추이에 따라 관련 현안과 실태를 저를 비롯한 환노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 발표와 더불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을 앞두고 정부와 시민사회·노동계·재계 등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11일 경제성장률·유가·산업구조 등 주요 경제 변수와 우리의 감축 노력, 국제적 요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다 완화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한국의 책임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기후변화총회에서 합의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후퇴금지 원칙에도 위반하게 된다며 환경단체 등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영국과 미국 등 G7 국가들도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정도입니다.

고용노동 부문에 있어서도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함께 청년실업 해결과 정년 연장 등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 일정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노동계의 반

발이 높아 구조개혁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규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이 당장에는 기업과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미래 세대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꼭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환경과 고용·노동 관련 주요 정책들은 항상 경제논리에 밀려서 큰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이런 정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국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취지를 감안하여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김종태·정미경·정용기·이완영·이종훈·양창영·이노근·김상훈·나성린 의원 발의)
2.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설훈·박홍근·박민수·민홍철·배재정·김상희·이찬열·이목희·오제세 의원 발의)
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양창영·최봉홍·이한성·김종태·윤영석·경대수·황영철·권성동·박창식·은수미 의원 발의)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황주홍·이종훈·서용교·나성린·양창영·이완영·최봉홍·김상민·김종태 의원 발의)
5.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이자스민·김우남·인재근·조명철·김상훈·류지영·강은희·이한성·정희수·양창영 의원 발의)
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설훈·박홍근·박민수·민홍철·배재정·김상희·이찬열·이목희·오제세 의원 발의)
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김상민·염동열·이완영·홍지만·이한성·박윤옥·신성범·주영순·박창식·이우현·김명연 의원 발의)
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백균기 의원 대표

- 발의)(백군기·김광진·윤후덕·황주홍·김세연·송영근·우원식·이인영·안규백·김춘진·한정애·權垠希 의원 발의)
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설훈·박홍근·박민수·민홍철·배재정·김상희·이찬열·이목희·오제세 의원 발의)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황주홍·이종훈·서용교·나성린·양창영·이완영·최봉홍·김상민·김종태 의원 발의)
11.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설훈·박홍근·박민수·민홍철·배재정·김상희·이찬열·이목희·오제세 의원 발의)
12.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이미경·유은혜·김기식·이인영·민병두·이춘석·노웅래·정호준·김성주·최민희·박남춘·전해철·우상호 의원 발의)
13.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배재정·김관영·김상희·이개호·조정식·김광진·박홍근·정진후·김태년·박남춘·홍의락·도종환·정청래·설훈 의원 발의)
14.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설훈·박홍근·박민수·민홍철·배재정·김상희·이찬열·이목희·오제세 의원 발의)
1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이개호·진성준·민홍철·박민수·유승희·조정식·박남춘·김우남·전해철 의원 발의)
16.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양창영·이철우·송영근·유승우·박주선·박홍근·김태흠·김윤덕·이한성·박남춘·문병호·김제식·김상훈·김학용 의원 발의)
17.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이완영·양창영·이종훈·나성린·최봉홍·서용교·권성동·김상민·강석호 의원 발의)
1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홍철호·김정록·한선교·박대출·민병주·민현주·김제식·김도읍·이병석·문정림·김기선·염동열·박인숙 의원 발의)
19.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이미경·유은혜·김기식·이인영·민병두·이춘석·노웅래·정호준·김성주·최민희·박남춘·전해철·우상호 의원 발의)
2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김성곤·김관영·이윤석·강창일·신기남·조정식·박주선·최규성·변재일·김광진·노영민 의원 발의)
2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설훈·박홍근·박민수·민홍철·배재정·김상희·이찬열·이목희·오제세 의원 발의)
2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김기준·박민수·이개호·이인영·이학영·장하나·정성호·최동익·한정애 의원 발의)
2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양창영·한선교·이한성·최봉홍·경대수·민홍철·김태원·정문헌·권성동·김종태·윤영석·박민수·황주홍 의원 발의)
2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양창영·이한성·최봉홍·경대수·민홍철·정문헌·권성동·김종태·윤영석·박민수 의원 발의)
2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은수미·이개호·조정식·정청래·박남춘·이인영·우원식·김우남·이석현 의원 발의)
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운 의원 대표발의)(박광운·황주홍·이춘석·안규백·최동익·김광진·김성주·최재성·변재일·조정식·최민희·이찬열·이학영·이목희·전해철·주승용 의원 발의)
2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김희국·류지영·황주홍·김도읍·민현주·권은희·박명재·김상훈·김태호·서상기 의원 발의)

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원욱·이목희·김성곤·이개호·최재성·부좌현·김기식·황주홍·이춘석·정청래·유승희·박민수·배재정·김기준 의원 발의)
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은수미·이개호·조정식·정청래·박남춘·우원식·이인영·김우남·이석현 의원 발의)
3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 의원 대표발의)(민현주·김명연·박성호·김희국·김정록·김제식·이종훈·이병석·유익동·권성동 의원 발의)
3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강기윤·김희선·박창식·김상훈·김기선·김재원·한기호·김용남·송영근·이완영·유승우·문대성·이자스민·민현주 의원 발의)
3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김영록·배재정·박남춘·백재현·부좌현·오제세·이개호·이상직·이종걸·정성호·주승용·최규성 의원 발의)
3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김희국·류지영·황주홍·김도읍·민현주·권은희·박명재·김상훈·김태호·서상기 의원 발의)
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이개호·정청래·황주홍·조정식·한정애·박남춘·최동익·부좌현·김광진·민홍철 의원 발의)
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송영근·강석훈·강기윤·양창영·홍일표·이한성·유의동·황인자·강은희 의원 발의)
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상직·김광진·최동익·박지원·신경민·이춘석·이찬열·이개호·주승용 의원 발의)
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양창영·황주홍·송영근·민홍철·김성곤·이한성·김기준·김종태·윤영석·박민수 의원 발의)
4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윤후덕·전순옥·노영민·강동원·신경민·이인영·이목희·민홍철·이상직·김승남·이개호·김기준·추미애·오영식·김성곤·최동익·박남춘·유은혜 의원 발의)
4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임수경·김영록·조정식·박수현·도종환·김성주·최규성·정성호·최민희·박원석 의원 발의)
4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이개호·김우남·신경민·배재정·서영교·조정식·김윤덕·안규백·오영식 의원 발의)
4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안규백·이인영·신경민·우원식·박광온·이목희·은수미·홍종학·최재성·장하나 의원 발의)
4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설훈·박홍근·박민수·민홍철·배재정·김상희·이찬열·이목희·오제세 의원 발의)
4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손인춘·강길부·정희수·정두언·함진규·정갑윤·박대동·이만우·문대성·김우남·김승남 의원 발의)
4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김경협·김광진·김기식·김기준·김상희·김성주·김현미·박남춘·박홍근·배재정·신기남·오영식·우원식·이개호·이목희·이미경·이상직·이인영·이춘석·이학영·이해찬·인재근·장하나·전순옥·전해철·정청래·진선미·진성준·최동익·최민희·최원식·한정애·홍종학 의원 발의)
48.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이자스민·정희수·류지영·인재근·박맹우·심학봉·권성동·양창영·김기선·김제식 의원 발의)

49.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설훈·박홍근·박민수·민홍철·배재정·김상희·이찬열·이목희·오제세 의원 발의)
5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조정식·부좌현·김광진·김승남·안규백·이개호·김우남·이상직·황주홍·김기준·이인영·노웅래·한선교 의원 발의)
5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이개호·민홍철·김성곤·전해철·황주홍·전정희·유기홍·김기준·정청래 의원 발의)
5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김광진·김상희·민홍철·박남춘·배재정·우원식·유승희·이개호·이목희·이인영·장하나·정청래·조정식·한명숙 의원 발의)
5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이개호·최원식·이한성·박지원·서기호·부좌현·최민희·서영교·은수미·이상민 의원 발의)
5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이찬열·최규성·주승용·이학영·인재근·안민석·전순옥·장하나·박홍근 의원 발의)
5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대표발의)(황인자·손인춘·이한성·김세연·유의동·권은희·황주홍·김정록·안규백·심재철·박맹우 의원 발의)
5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설훈·박홍근·박민수·민홍철·배재정·김상희·이찬열·이목희·오제세 의원 발의)
5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김광진·김제남·박광온·박원석·서기호·이인영·장하나·정진후·한정애·홍영표 의원 발의)
5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설훈·박홍근·박민수·민홍철·배재정·김상희·이찬열·이목희·오제세 의원 발의)
6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김춘진·남인순·은수

미·이개호·이인영·전순옥·정청래·전선미·한명숙·한정애 의원 발의)

6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김영록·김종태·민홍철·이종걸·임수경·유성엽·정호준·최규성·홍문표·황주홍 의원 발의)

62.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권은희·양창영·안효대·정희수·정갑윤·박덕흠·심윤조·이명수·박성호·이만우·강석호·김광림·이종배·김태환·홍철호·장윤석·홍지만·주호영·김정록·김종태·이완영·김성곤·박상은·박창식·이철우·정병국·이강후·김을동·박민수·조현룡·나경원·이병석·홍일표·이노근·황영철·정미경 의원 발의)

(14시15분)

○위원장 김영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2항까지 6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5항까지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 상정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334회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전체 회의에 상정된 법률안 중 정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의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 요청한 사항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아 재보완 내지 재제보완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보완 요청 횟수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어 제대로 보완될 때까지 재보완을 요청하게 됨에 따라 역기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업자는 협의 완료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하면서도 적당히 땀질식으로 보완하여 보완 요청을 반복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평가서 보완 요청 횟수를 2회까지로 제한하되 중요 요청사항이 보완되지 않으면 평가서를 반려토록 함으로써 평가서 협의절차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현 시행령 규정은 모법의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이라는 환노위 행정입법 검토를 수용하여 법률로 상향입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문가, 이해 당사자, 관계부처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한 법률안이니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심의의 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24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의 노트북 바탕화면에 있는 제안설명 폴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충덕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5항까지 2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환경부 소관 25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영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기상관측장비, 강수량계 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을 기상청이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들 장비는 이 법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 시책을 위해 지자체가 소유하는 장비로서 유지·보수 비용의 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양승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은 각각의 법률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조사의 실시 주기, 대상기관의 정보 제공 의무, 실태조사의 결과 공개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협조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악취방지법 및 습지보전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현행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조항의 경우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고, 석면안전관리법 및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하위법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집행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창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협약에 따라 국가적으로 감축 또는 폐기 의무가 부여된 물질인 냉매의 판매와 사용 전반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통계 구축을 위하여 냉매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판매량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주영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유소 등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시 현재 각각의 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어느 한 개의 법에 의한 변경신고만 하면 나머지는 의제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자스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품질관리인이 되려는 자 또는 품질관리인을 두지 않는 먹는샘물 등의 개인 제조업자가 사전에 반드시 품질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나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교육이수를 허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수도법에 따라 급수관의 주기적 검사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립학교, 의료시설, 공동주택을 새로 포함하려는 것으로 국민 위생안전 강화 차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백군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악취 배출시설에 속하지 않는 하수관로,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하여 시·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이 조례로서 악취 검사 및 악취 방지시설의 설치 등 악취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안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부좌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령으로 정하는 빛 방사 허용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권성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사 등의 업무를 거버넌스 조직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거버넌스 조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김명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개인 하수도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공공 하수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하수도 수입금을 개인 하수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국민 불편해소 및 하수도 수입금의 탄력적 운영 차원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주승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안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우원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기 이전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범법자 양산 방지, 업무의 전문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양창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이 사용이 제한된 환경 유해인자의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시료 채취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중금속 등의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시료 채취의 정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양창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시험·검사기관의 환경측정분석사 의무고용을 위반한

기관에게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등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후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등을 재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은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고 평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측면과 함께 행정행위의 연속성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 생략에 따른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 존함)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62항까지 37건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의원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노동위원 여러분!

정의당 덕양갑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2015년 4월 9일 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것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으로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비정규직 비율도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서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법의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고용의무조항은 이행강제력이 낮아서 실제로 청년일자리 창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4년도 의무이행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391개 대상기관 중

에 25.6%가 청년미취업자 고용의무비율 3% 기준을 못 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고용의무조항은 오는 2016년까지만 효력을 갖는 한시적인 조항입니다. 2013년 법 개정 당시에 청년취업난 완화의 취지가 오늘날에도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조항의 효력을 연장할 필요성도 절실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상향하고 민간 대기업에도 확대 적용하며, 고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해서 이행력을 높여서 청년취업난 완화에 기여하려고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 이상으로 올리고 이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며,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해서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청년미취업자 고용의무와 청년미취업자 고용부담금 제도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시행된다면 공공기관에서는 8만 명, 민간 대기업에서는 12만 명 등 총 20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생깁니다. 이는 우리나라 청년실업자의 3분의 1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아무쪼록 제가 설명드린 이 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 31항, 제41항, 제5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존경하는 김영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금체불을 예방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퇴직·사망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만 부과하던 지연이자를 재직 근로자 임금 미지급 시에도 적용토록 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는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 외에 추가로 동일한 금액의 지급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체불이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체불사업주 명단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지급제한사유인 조기복직, 이직 등 여부를 신청서를 통해 확인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다른 조항에서 신고토록 하고 있는 것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폐지하는 대신 지방고용관서에서 상시적으로 근로자공급사업자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여 예방과 시정조치를 하도록 관리하는 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33건의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3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노트북 바탕화면에 있는 제안설명폴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 26항부터 제62항까지 3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의사일정 제26항부터 62항까지 총 37건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검토의견을 배부해 드린 요약본에 따라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의사일정 제26항과 30항,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보험기금에 고용복지사업계정을 신설하여 모성보호급여와 실업크레

및 지원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실업급여계정의 적자를 심화시키고 있어 계정 신설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고용보험료 부담 주체인 근로자 및 사업주와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의 의사일정 제29항과 31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가운데 제31항 정부안은 육아휴직기간 중 이직하거나 재취업한 자의 신고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직 또는 재취업 신고는 육아신청서 작성 시 부수하여 행하여지므로 별도 신고조항을 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쪽의 의사일정 제32항 민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 등 가족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던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우선채용 하거나 특별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불합리한 채용우대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근절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사회적 신분을 차별사유로 규정한 현행 법령 외에 새로이 차별 형태로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제34항, 그다음에 36항부터 41항까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 가운데 제33항 권성동 의원안은 근로시간 단축, 경영상 해고 요건, 통상임금과 관련된 내용, 임금체불 근절대책과 관련된 내용, 규제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온 관련 법안과 같이 심사하여 입법적인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고, 임금체불 근절과 규제개혁은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의 제38항 박광온 의원안은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보장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난임은 그 원인과 치료방법 및 기간이 매우 다양하므로 90일 이내의 난임휴가를 일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가임기 여성고용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제39항 양창영 의원안은 노동위원회가 금전보상제로 구제명령을 내릴 경우에 위자료 지급명령도 할 수 있도록 위자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는 타당하나 위자료의 지급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

았습니다.

다음, 제41항 정부안은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예방하는 방안으로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 시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제공 근거, 상승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부가금 부과, 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지연이자 규정 근거를 마련하고 벌금과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상승적인 체불 사업주를 적절히 제재하고 체불피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반 제도개선을 담고 있다고 보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7쪽의 의사일정 제44항과 46항 남영고 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가운데 제44항 김현미 의원안은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하는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기업에 비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제46항 하태경 의원안은 말기암 환자를 가족으로 둔 근로자에게 가족임종휴가를 부여하는 한편 현재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경조휴가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업주 부담 문제, 암 이외의 다른 질병으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를 둔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8쪽, 의사일정 제47항 은수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쟁의 대상에 정리해고를 포함하고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하며, 손해배상액의 경감청구 근거를 마련하고 손해배상액의 상한액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지는 않는지, 법 개정으로 다른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이자스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사발전재단의 사업에 노사관계 발전과 관련된 국제협력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재단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국제협력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쪽의 의사일정 제50항부터 54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 가운데 중간의 제52항 은수미 의원님 안은 피해 범위가 크거

나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 진단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안전·보건 진단 의무화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기관을 공단으로 제한하는 것은 관련 인력 및 장비 확보 여부, 탄력적 운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제54항 한정애 의원님 안은 사업장에서 위급상황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119구조·구급대에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구급대의 구조·구급 여력, 사업장의 구급차량 및 인력 보유 여부, 사업장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1쪽의 의사일정 제57항 정부가 제출한 직업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3년으로 규정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기간을 폐지하여 근로자공급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내용으로 허가 유효기간을 폐지할 경우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지며 정부가 시장상황에 따라 인력공급 규모를 조절하기 어려워진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1쪽 중간의 의사일정 제58항 심상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비율을 5% 이상으로 올리고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며, 다만 다른 연령대의 구직자와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고용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해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도 병행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쪽의 의사일정 제60항 장하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위촉 방식을 국회에서 일부 선출하도록 변경하고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하며 방청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민의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의 소지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 존함)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와 기상청 및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는 정해져 있는데요.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은수미 위원 명단이 없는데요?

○위원장 김영주 지금 명단 나눠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문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문대성 위원 저는……

○위원장 김영주 그러면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신다고요?

○은수미 위원 순서가……

○권성동 위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손 들어서 하세요.

○은수미 위원 그래요? 저 준비가……

○위원장 김영주 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이석현 부의장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현 위원 짧게 할게요.

은수미 위원님이 준비를 단단히 하신 것 같은데 준비를 덜한 사람이 먼저 해야 체면이 설 것 같아서 먼저 합니다.

환경부장관께 지금 의료폐기물 수거 처리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급차 운전자, 동승한 대원 또 환자 이송요원이 메르스에 감염되는 등 의료진뿐 아니라 의료 관계 종사자들 문제도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석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의료폐기물 관련 종사하는 분들의 감염이 확인되거나 그런 의심이 되는 사례가 보고된 게 있나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폐기물 관련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런데 감염 경로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폐기물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전파될 가능성도 이렇게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 보고는 없나 본데, 그래서 이것을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의료폐기물 배출 업체가 위반한 건수가 182건이나 돼요.

그 내용을 보면 처리 기준 위반 또 보관 기준 위반 등등인데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그런 부주의가 용납돼서는 안 되겠다, 철저히 관리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지난 6월 4일에 환경부가 메르스 격리 의료폐기물 수거와 처리 특별대책을 만들었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석현 위원**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자면, 거기에 죽 5개 항목이 나와 있던데 의료폐기물을 당일에 배출하고 최단 기간 내에 소각 처리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 평균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이 굉장히 많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의료폐기물은 많지만……

○**이석현 위원** 한 457t 정도 나온다고 돼 있는데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격리 폐기물은 아주 적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격리 폐기물은 삼성병원의 경우에도 100kg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전국적으로, 소각처리 업체가 수도권에는 세 군데만 있다고 돼 있어요. 전국 다 합하면 열여섯 군데가 되고,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수도권에 가동되는 데, 안 하는 데까지 포함해서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래서 수도권 폐기물 중에 상당량이 지방으로 운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메르스 상황에서는 감염 경로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폐기물이 지방으로 이동하는 게 위험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있거든요, 실은.

더구나 이번 환경부 조치로 매일 운송을 한다면 위험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데, 장관은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가 없을까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발생한 병원 자체에서 처리하지 않는 한 이동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으로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동할 때 철저히 봉지에 넣어 가지고 또 이중으로 누출이 차단되는 용기에다가 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

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이동을 한다면 중간에 그런 오염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다 할 때는 이게 누출이 되겠지요. 그것은 서울시내에 이동 중에서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고 장거리 이동할 때도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석현 위원** 그 점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되지만 특별히 의료폐기물을 매일 접하게 되는 종사자들의 안전도 또 문제입니다, 의료폐기물 처리하는 종사자들.

그러니까 환경부는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하던데 그러면 개인 보호 장구를 지급을 했나요, 환경부가?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이석현 위원** 그러면 그 보호 장구는 어떻게 착용하게 됩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그 처리 업체가 영업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기 때문에……

○**이석현 위원** 업체가 사서 지급을 해라, 종사자들한테, 그런 얘기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게 해야지요.

○**이석현 위원** 조치를 강화하면서 추가로 예산을 지급한 것은 없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석현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돈은 안 주고 이것을 보호 장구를 전부 착용하라라고 말씀을 지시를 한 거니까 이게 잘 지켜지나 특별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이석현 위원** 잘하셨네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랬더니 철저히 마스크를 쓰고 또 옷도 전용 옷을 입고 이렇게 처리하는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석현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보호 장구는 정부에서 사 주면 좋을 텐데, 지원해 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기에 여의치 않은가 보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정부라는 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이석현 위원** 아니, 메르스 상황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추가로 발생한 거라 그것을 이 업체가 다 부담해서 하라고 지금 한 건데, 일단은 그렇게

하나 안 하나 잘 감독을 하셔야 할 일 같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잘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리고 부처 간 공조 체계에 대해서도요, 6월 4일에 범정부 메르스 대책 지원본부 구성을 정부가 했는데 환경부는 거기 안 들어 있잖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는 발생 단계에서 이렇게 직접 관련이 적어서,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단계 이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의료기관을 늘 출입하는 의료폐기물 업체한테 메르스 환자 치료병원, 격리병원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달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환경부가 범정부 대책본부에 포함 안 돼 있더라도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어야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별도 라인을 구축하든지 해서 그런 정보를 시시각각 받아 봐야 하지 않겠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살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노동부장관께서는, 시간이 다 돼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현주 위원** 고용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관련해서 아까 수석께서 주신 검토의견 봤는데요. 취지는 타당하나 논의가 필요하다,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민현주 위원** 고용노동부가 얼마 전에 제가 분명히 언론 통해서 보도자료를 내거나 인터뷰했을 때는 분명히 필요한 조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이 제기하신 고용 세습을 금지토록 하는 입법 취지는 검토보고서도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현주 위원** 그런데 신설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것은 저희 기본법에 여러 가지 성, 연령, 장애, 종교, 여러 유형별로 차별을 못 하도록 한 현행 기본법 취지만으로도 세습 조항은 충분히 방지가 가능하다고 하나 보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신분에 의해서 차별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어서, 만약에 현재 기본법 취지를 가지고 위원님이 제기하신 세습을 막지 못한다면 별도 입법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기본법 취지를 가지고도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권고를 하고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아마 그렇게 검토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민현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1항에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으로 다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런 취지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현주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4월에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사업장 규모별에서요—이 조항에 해당해서 가족들을 채용한 사례가 나왔지요? 언론에 보도됐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단협에 그런 위반……

○**민현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관련된 법은, 이미 96년부터 실태조사 통해서 고용 세습 조항 있다는 것 알고 계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민현주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실태조사를 하고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했다면 2015년 4월에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이 자료에서는 안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관련된 위반 사항은 왜 그때그때 적시에 조치하지 못하셨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위원** 그러면 매번 기한이 지난 다음에 실태조사를 해야만 위법 사항도 해서 사후적으로 한참 지난 다음에 조치를 하실 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요……

○**민현주 위원** 고용노동부가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에게 답변을 주신 내용은 뭐냐면 ‘당시에는 위법 여부 주목하지 못했다. 당시 채용 관행이 그랬다’, 그러면 관행이 법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

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청년 실업이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목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채용률 높아지고 고용률 높아지면 위법 사항도 눈감고 넘어가고 고용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렇게 법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 충분히 맞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법에 신분상 차별할 수가 없는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현주 위원** 이것은 법안소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거고요.

장관님, 제가 지난번에 4월 달 임시국회 때 기간제 연장 관련해 갖고……

이것은 법안 질의는 아닙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 2년, 4년 갖고 제가 질의드렸고 장관님 답변하셨지요. 그때 제가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그렇지요?

2년보다 4년이 정규직 전환율이 더 높다라는 경험적 자료가 있다고 장관님 말씀하셨고 그 자료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은 자료는 그 당시에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그 자료 그대로 받았습니 다. 2년 그 기간까지, 2년 이상이라고 했지 2년과 4년이 전혀 구분돼 있지 않은 자료만 받았습니 다.

이것 관련해서 왜 자료 제출 안 하시는 거지 요?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저희한테 관련 자료 없다 고 얘기했거든요.

장관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것은 제가 더 세밀 히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소……

○**민현주 위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자 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러겠습니다.

○**민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민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은수미 위원님.

○**은수미 위원** 저도 처음에 자료 요청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오늘 오전 7시 정도까지 제가 작성한 거

라서 숫자가 달라요.

지금 누적 확진자가 150명이고 그리고 삼성서울병원만 확진자가 71명에서 72명으로 늘었는데, 제가 지금 요청하는 게 뭐냐면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해서 지금 모든 병원 비정규직이 이 법……

오늘 신문 보셨지요? 137번 환자가 이송요원이 고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계속 발열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했어요, 관리 대상이 아니었고.

지금 제가 추정을 해 보니까 삼성서울병원 비정규직 비중이 35% 정도 돼요. 이게 저희들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지만 병원 평균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삼성서울병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확진자 나온 병원뿐만이 아니라 현재 거점병원 정규와 비정규직 현황과 비정규직까지를 지금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적어도 고용부는 이것을 조사 하셔야 되고요.

서울시가 삼성서울병원 몽땅 전수조사 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고용부가 전수조사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공의 생명과 안경을 위해서 파업권마저 못 하게 자제시키면서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경을 위한 업무는 몽땅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확산시킨 요인의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방에서도 계속 자료 요청을 합니다. 반드시 이것을 저희한테 주시고요.

특히 이런 업무에 대해서 도급 금지는 다음 질 의 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것은 자료 확인 을……

이게 고용부의 2015년 3월 19일 보도자료에 근거해서 일제히 신문들이 낸 거예요. ‘정년 연장 내년인데 임금피크제 13%뿐’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저는 고용부가 이런 꼼수 쓰면 안 된다, 저 기사 맞는…… 저것 보도자료에 근거해서 한 겁니 다. 저것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리지요? 고용부 직원들은 알고 계세요. 최소한 임금피크 제 도입이 2014년 6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 23.2%라고 본인들이 매년 조사한 사업체노동력 부가조사에 나와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것은 통계를 어 디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은수미 위원** 그런데 저것만 딱 내 가지고

13.4%…… 300인 이상 지금 사업체노동력 부가 조사 매년 조사하는 것 6월 1회, 연 1회 연속적으로 조사하는 것에서 이미 이 23.2%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이 300인 이상은 23.2%로 얘기하고 있고요……

○**은수미 위원** 저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임금피크제 시행 300인 이상 사업장 13.4%’ 정확하게 2015년 3월 19일 고용부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저게.

왜 그런지 아세요? 고영선 차관님, 차관님이 한 보도자료 6월 14일자에는 23.2%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고용부가 3월 19일 날 보도자료에는 13.4%라고 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요, 저희도……

○**은수미 위원** 그리고 그 조사는 다른 조사예요, 딱 이번에 처음으로 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마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은수미 위원** 이것 틀렸잖아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체 사업장은 9.8%, 300인 이상은 23.3%, 공공 부문은 17%……

○**은수미 위원** 아니, 잠깐만요, 3월 19일 보도자료를 다시 보시고요. 거기도 그렇게 쓰여 있으면 저한테 한 말 하세요. 무슨 뜻인지 아셨어요? 3월 19일 보도자료와 6월 14일 보도자료가 다르지요, 그래서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신문들이 13.4%라고 저렇게 쓴 겁니다. 이런 짓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 자료가 왜 또 문제냐면요.

고용부장관님, 2014년 6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이 정년제를 도입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60세 정년, 37%가 넘어요. 그다음에 300인 미만까지 합치면 50.7%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은수미 위원** 정년제가 이미 50.7%가 도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임금피크제가 일부, 그러니까 정년제를 도입을 했는데 임금피크제 안한 기업도 있고 한 기업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그것은 쪽 빼먹어서, 지금 2014년 6월 현재 50.7%가 60세 정년을 도입을 했어. 그러면 2015년에는 더 늘어날 것이고 내년은 더 늘어나겠지요. 그게 현실인데 임금피크제의 수치도 조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낮은 수치를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임금피크제를 적게 도입을 해서 정년제 대비 안한 것처럼…… 그런데 고용부는 수치를 알고 계시잖아요, 매년 조사를 하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그것은 크게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은수미 위원** 아니요, 크게 오해한 게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가 언론에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현황을 보도를 할 때……

○**은수미 위원** ‘정년 연장 내년인데 임금피크제 13%뿐’이라는 저 기사가 그러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정년 연장을 이미 한, 60세 이상 정년 연장을 한 기업이 2014년 현재 50.7%이니 크게 걱정할 건 없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하면 좀 더 유리할 수는 있다’ 이렇게 하셔야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도 임금피크제를 하는 것이……

○**은수미 위원** 그런 말을 2015년 3월 19일 보도자료서부터 2015년 6월 14일 보도자료까지 단 한번도 60세 이상 정년제 도입이 이미 2014년 작년 6월 현재 50.7%라는 말은 어디에도 한 적이 없어요, 고용부가.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할 때나 또 저희들이 현장에 지도할 때……

○**은수미 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좀 답을 드리려고요.

그다음, 제가 하나 질문을…… 그러면 지금 임금피크제 도입을 했다는 이유로 월 근로자들한테 90만 원, 최대 1080만 원까지를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근로자에게.

제가 여쭙 보고 싶은 게 10대 재벌이 지금 522조, 이게 2014년 사내유보금이 522조인데 여기서도 그 돈 줍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다음 넘겨 주세요.

그래서 10대 재벌이 522조인데 작년에 6.5조밖에 투자를 안 했어요, 2013년에. 이래도 돈 줘요,

사실은.

그다음 넘겨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질문만 하고요.

이렇게 보세요. 이제성 전 회장, 현대중공업 경영 적자액이 1조 7546억인데 본인은 37억 원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2015년 1500여 명 명예퇴직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적자이고 구조조정 정도 하면서 지는 5억~57억까지 가져간 회사들의 일부 명단입니다.

거기다가 고용부는 저기 KT, 1조 1418억 원 적자이고 본인은 5억이나 가져가고 구조조정까지 한 저기를 임금피크제 대표 도입 사업장으로 또 추천까지 하셨더라고요. 보도자료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300인 이상 사업장한테 저렇게 마구 주게 되면 저 기업은 적자 하고 구조조정하고 남은 직원들 이제 임금피크제하고 지 돈을 다 가져가는 이런 게 되어서 자칫 임금피크제가 대기업에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완전히 기업에다 돈 몰아주는 격이 되는데, 저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을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우선 임금피크제 통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임금피크제를 설명을 할 때 전체는 9.9%이고 대기업은 23.2%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기사화된 것은 조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임금피크제와 정년과 관련해서는 단위 사업장에서 노사 간에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원만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열심히 현장에서는 협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도를 통해서 제가 수시로 강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통계를 뽑아 보니까 임금피크제를 한 사업장이 50세 이상 근로자들의 고용유지율이 높다는 부분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도입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요.

대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정년까지, 정년제도만 도입하면 주는 게 아니고 실제 근로자들이 정년까지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에는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런 차원에서 대기업도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 마지막 표에 나오는 소위 대기업의 퇴직금이랄지 급여로서 많이 받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고임금 임직원들의 임금 자제 또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자제를 통해서 청년 채용을 확대해 가야 된다고 강조를 할 때 저런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자제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강조를 했고 그런 취지로 현장에 계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우원식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INDC, 최근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부가 발표했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지난번 09년에 BAU 로드맵을 제출한 것으로는 2020년이 2012년 대비 30%를 감축을 하면 저 표에서 이만큼 내려와야 되는데 이번에 4개 안을 내놓은 것을 보니까 가장 강력하게 하는 31.3%, 2030년 BAU 대비 31.3%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2020년 30%를 감축하겠다 하는 것을 완전히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최종안이 확정되어야……

○우원식 위원 아니, 최종안도 이 4개 안 중에서 하나로 갈 것 아니에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국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우원식 위원 아니, 지금 2020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 어디로 갔느냐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2020년 감축 30%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2년 대비 30%는 아니고요, 아무런 조치 없이 2020년에 갔을 때 발생하는 게 7억 7600만t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30% 줄인다는 게 당초의 목표였습니다.

○우원식 위원 30% 줄이는 게 어디에 갔느냐 이거예요, 2020년 대비해서 30% 줄이는 게. 지금 이 4개 안 내놓은 것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안 될 가능성이……

○우원식 위원 아니,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저 표를 보세요.

저기 지금 31.3% 줄이겠다고 하는 4안이 지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대로 가려면 점선으로 가는데 2020년 대비 30%는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런 부분도 정부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가지 안을 놓고 국민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원식 위원** 아니, 장관님, 왜 그렇게 비겁하게 얘기하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고요.

○**우원식 위원** 아니, 지금 2009년에 우리가 국제사회에다 발표했던 2020년 30% 감축, 여기에 못 가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니까 얼마나 못 가는지는 아직 세부적으로는 안 나온 상태입니다.

○**우원식 위원** 아니, 그것도 지금까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1안, 2안, 3안, 4안이 그대로 나왔는데 2030년 감축 후의 배출량이 1안은 7억 2600만t 등등 해 가지고 수치가 다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BAU 대비하면 제4안이 31.3%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원래 계획했던 2020년 대비 30%는 아예 근처에도 못 가는 것 아닙니까? 무슨 장관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4개 시나리오는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또 미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우원식 위원** 그러면 제가 미래를 안 보고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미래를 보는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4개 시나리오를 내놓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원식 위원** 장관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무슨 맹인들하고 이야기하시는가 봐. 우리가 앞을 못 보는 사회입니까? 맹인들도 지금까지 겪어 온 사회 보면 다음 사회를 알 수 있습니다. 감각적으로 다 압니다.

지금 2020년 대비 30%, 그것을 지금 못하기 때문에 또 4개 안을 내놓고, 아예 제가 아까 그 표에서 봤듯이 근처에도 못 가는 안을 지금 내놓고서는 무슨 미래를 얘기하세요? 이렇게 되면 현행 법령들을 다 지금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고 여기 못 가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최종안이 결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른……

○**우원식 위원** 아니, 최종안이 결정되어도, 최종안 4개 안 중에 4안으로 간다고 해도, 가장 강력한 안으로 간다고 해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안 되는 것 가지고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니까 어떤 것이 결정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또 결정이 되면……

○**우원식 위원** 4개 안 중에서 하나 결정할 것 아니에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4개를 지금 내놓고 어떤 게 결정된다는…… 또 그것 4개가 아닌 또 다른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개방된 상태에서 지금 정부는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제가 맹인이라고 한 말은 시각장애인으로 바꾸고요.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지금 명백한 것 가지고 아니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 환경부가……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우원식 위원** 지금 환경부가 저탄소차협력금 시행을 명시한 것, 대기환경보전법도 위반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도 위반하고 있지요. 지금 최소한 국가 온실가스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을 지금 다 위반하고 있어요. 그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끼리만 한 약속이 아니라 말이에요. 국제사회하고의 아주 중요한 약속이에요.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BAU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을 국제사회에다 약속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번 2013년 12월에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출범식에서 30% 감축을 약속했어요. 심지어는 최근에 미국 가는 것을 연기하는, 오바마 대통령하고 실제로 통화했던 10분 기간 동안 오바마 대통령도 이 문제를 우려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부가 이렇게 계속 산업계의 이해만 반영해서 자꾸 후퇴를 하면 국제사회하고의 약속도 위반하고 우리 자체의 법령도 어기고, 이렇게 해서 이게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국제적으로 망신이고 결국은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가 되어서 미래 사회로 보면 우리 산업 경쟁력을 지금 장관께서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는 건데 이것보고 우리한테 어떻게 동의하라는 말입니까? 이것 지금 환경부장관께서 범죄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미래 얘기 하는데 미래의 산업 경쟁력을 해치고 있는 거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원님 걱정 저도 충분히 동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고 제조업을 갑자기 저탄소산업으로 전환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위원** 그래서 2009년에 약속을 한 거고 그것을 차근차근 지키자고 했는데, 지금 2015년 아니에요? 6년 지나서 지금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못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그랬더니 ‘미래를 봐서 그렇지 않을 수 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나……

○**우원식 위원** 산업계의 요구에 의해서 못 하겠다는 거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거는 산업계의 요구가 아니고 정부 내에서 관련 전문기관들이 모여 가지고……

○**우원식 위원** 관련 전문기관이 누구예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우리……

○**우원식 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녹색성장위 그런 거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또 우리 KEI도 있고요, 산업연구원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래서 환경부장관은 그런 분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수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 혼자 수용하고 거부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정부 내에서의……

○**우원식 위원** 환경부장관이 최소한의 결기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정부 내에서 치열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지금 이 네 가지가 나온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원식 위원** 그래서 논쟁에서 졌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기고 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원식 위원** 그렇게 하면 환경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환경부가 뭐 하러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 환경부도 환경부 목소리를 충분히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4개 시나리오 중에 우리가 주장한 부분도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참 정말…… 그렇게 하면, 지금 이거를 이렇게 결정하게 된 에너지경제연구원이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녹색성장위 이런 기관들과 국회가 산업부, 환경부 같이 해서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부처는 범부처별로 또 그런 전문기관은 전문기관대로 전부 이렇게 모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국회가 그런 자리를 만들 테니까요, 이게 그냥 정부에만 맡겨서 되지 않겠어요. 이거 미래의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다 무너뜨리는 일이고, 지금 산업계의 요구만 반영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환경부장관이 너무 역할을 못해요. 정 안 되면 국회에 와서라도 하소연이라도 해야지, 하소연도 못 하고 이렇게 늘상 산업계 요구에 의해서 밀리고 후퇴 당하고…… 그러면 뭐 하러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창피하지 않으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는 제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수원 출신 김용남 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김용남 위원** 지금 임금피크제 논란이 있는데, 우리가 2013년 5월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소위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 법률에 보면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한다’고 하고 ‘60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정년은 60세로 본다’고 19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19조의2를 보면 의무 주체가 사업주도 있고 노동조합……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노사로 돼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자에 대해서, 근로자 측에 대해서도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할 때, 2013년 5월 달에 논의했던 19조의2에 있는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 이걸 구체적으로 뭘 상정하고 19조의2를 당시 개정했던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때 당시에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년 60세를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도입하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선 현재 있는, 소위 근속기간이 긴 근로자들의 경우에 호봉제 임금체계 때문에 정년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기업의 부담도 좀 줄여 주면서 정년까지 가자는 목적, 두 번째 정년이 통상 한 2~3년 늘어나게 되면 청년들의 고용이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청년고용의 어려움도 좀 해소하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임금피크제나 임금 조정 등 전반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자라고 노사에게 의무조항으로 들어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여기서 ‘임금체계 개편 등’이라고 하는 조항에 있어서 핵심적인 게 임금피크제였나요, 논의가 됐던 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당시에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하셨던 김성태 의원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밝히실 때도 이거는 임금피크제가 당연히 포함되는 걸로, 임금 조정이라는 개념 안에는 임금피크제가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뒤로 약 1개월 정도 있다가 고용노동부장관, 당시의 한국노총위원장 또 경총 회장, 노사정 세 주체가 연관해서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자라고 하고 이 부분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자라고 합의한 바도 있습

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속기록을 봐도 그 내용이 명확하고요. 그 이후에 방금 말씀하셨던 근로자 측도 포함된 합의 내용을 봐도 명확한데, 당장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되는데 지금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많고 그리고 근로자 측, 노총 측에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표면적으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이렇게 2년 사이에 180도 확 바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합의가 다 됐던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가 그 뒤로 금년에 3개월 동안 노사정 간에, 노사정 대표자 또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타협을 즉 추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기본적으로 임금피크제를 해서 아까 두 가지 불안 요소를 해소해야 된다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산하 연맹별로 입장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임금피크제를 하더라도 노사가,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기존에, 지금까지 정년이 57세였거나 58세인 사업장에서…… 정년이 내년부터,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적어도 한 2년 내지 3년이 늘어나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김용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명이 근무하던 사업장 같으면 매년 50명씩 정년을 맞아서 퇴직하던 근로자가 나왔다고 치면 앞으로 2~3년 동안은 정년을 맞아서 퇴직하는 근로자가 1명도 안 나올 상황 아닙니까,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공공부문에는 특히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사실은 신규채용 수요가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납니다만 내년도에, 특히 대기업을 비롯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신규채용 규모나 계획에 대해서 지금 조사된 바가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우선 금년 봄에 저희들이 금년도 채용계획을 매출 50대 기업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절반 이상이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계획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 부분은 계획이 앞으로 있을 거라기보다는 정부가

청년 채용을 권유를 하면서 물어보기 때문에 사실상 채용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그런 답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어서, 또 지금 졸업하는 청년들의 소위 취업 기간까지 걸리는 기간이랄지 여러 통계를 보면 정년 60세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 노사 대표들도 현장의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청년들을 좀 채용해야 된다 하고 있고 공공부문을 앞장서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사실상 50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신규채용 계획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도, 1명도 새로 채용을 안 해도 전체적인 근로자 수는 전혀 줄지 않는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논리대로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런데 지금 좀 아쉬운 것은 2013년 5월에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을 하면서 아예 임금피크제나 이런 것을 어디 법령화에…… 19조의2를 그 의미로 그냥 박은 건가요, 될 줄 알고?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때도 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조건으로 할 것이냐 많은 논란을 하다가 정년을 60세로 간주하고 이거는 노사에게 의무로 지우자 이렇게 했고, 그 정신을 받아서 노사정 대표들이 그러면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을 우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반영토록 노력하자라고 해서 그게 합의가 된 걸로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와서 법률체계를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김용남 위원** 그렇지요, 사후약방문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법에 노사에게 의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성실하게 일하면 6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 고용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 수준이 되는 데는 임금피크제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런데 지금 임금피크제의 비율도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만 임금피크제가 시행이

되면 소위 고용절벽이 어느 정도 해소될 건지 좀 나온 사례가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도 어느 연구기관에서 26조, 31만명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임금피크제…… 상위 10%가 1%씩만 임금 자체를 하더라도 1%당 6만명 얘기가 나오고 있고, 순수하게 300인 이상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하면 약 13만 명 효과가 나오고, 분석은 여러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朱永順 委員** 주영순 위원입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朱永順 委員** 정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 임금 외에 체불 임금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朱永順 委員** 그동안 정부에서는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명단 공개, 신용 제재 등의 방법으로 제재를 해 왔지만 체불 사건은 매년 18~19만 건이 발생하며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형사처벌의 경우도 최근 4년간 체불 임금 대비 벌금 부과액이 30~50% 미만은 13.9%, 50% 이상은 6.2%에 불과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금전적 제재의 한 유형이며 동시에 손해배상 성격을 갖는 부가금을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행정력을 동원하여 징수하는 과징금·부과금과 달리 부가금은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가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아주 복잡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또한 승소판결 받은 후 집행권을 받아도 실제로 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개정안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실효성 제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이 실효성을 받기까지는 확정판결이랄지 과정에 좀 제한적인 요인이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제도만을 가지고 하면 실효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 외에 지연이자 제도를 재직근로자까지 확산하기 때문에, 일단 현재의 체불에 대한 처벌조항 또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연이자 제도를 보완하면서 이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과거 보다는 임금 체불을 했을 때 기업이 급여상, 그러니까 지연이자랄지 또는 부가금이랄지 이런 금전적인 어떤 손해나 또는 형사처벌, 여러 가지 조항으로 봤을 때 부담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지금 보다는 체불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1년 중 4개월 이상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4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일 경우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습적인 경우를 판단하는 데 있어 4개월을 기준으로 삼은 것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기업들이 정말 경영이 어려워져서 체불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고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또 지금처럼 당연히 임금을 먼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임금은 늦게 줘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체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몇 개월로 하느냐는 굉장히, 과학적인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간의 통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한 4개월 정도로 계속 이렇게 지연해 가면 상습으로 보는 게 적절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학계를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朱永順 委員 다음, 환경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고 회의에서 건의된 과제의 90%가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환경 소관 법령에서도 여전히 불편한 규제가 여러 방면에서 산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 토양

법이든 토양법, 수질법이든 수질법으로 하나의 법령으로 적용받지 않고 기업별 특징에 맞는 여러 가지 환경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朱永順 委員 그런데 문제는 사업장의 명칭이 바뀌었거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것처럼 단순한 행정사항 변동이 있을 때 역시 적용받는 모든 환경법령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업종 변경이나 취급하는 물질이 바뀐 경우에는 각각의 환경법령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단순한 행정사항 변경에도 개별법에 일일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분법체계로 가다 보니까 똑같은 조문이 각 법에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받는 사업자로 봤을 때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담아서 의원님이 의원발의 해 주신 통합적으로 신고 받게 하는 이런 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朱永順 委員 다음에 기상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차장 나오셨지요?

○기상청차장 정홍상 예.

○朱永順 委員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라 기상관측시설의 자료품질 등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상청차장 정홍상 예.

○朱永順 委員 수집되는 기상자료의 품질이 어떻습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관측기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관측기의 품질에 차이가 있습니까?

○기상청차장 정홍상 저희가 관측표준화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측 결과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품질 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관측시설의 품질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니까?

○기상청차장 정홍상 사실 시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좀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철저하게 유지·보수를 안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자료 활용을 주로 기상청이 하기 때문에 사실 자기들로서는 관심이 좀 적은 게 실정입니다.

○朱永順 委員 최근 6개월 동안 관측자료 품질의 우수등급 비율로 따져 보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관측시설은 87%이었던 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자체 운영 관측시설은 절반에 그쳤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기상청차장 정홍상** 예.

○**朱永順 委員** 조금만 더 하겠습니까.

청장께서 밝힌 바와 같이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관측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운영하는 것이 관측시설의 품질을 올리고 공동 활용의 기반을 구축하여 기상재해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그렇지요?

○**기상청차장 정홍상** 예.

○**朱永順 委員** 결국은 예산이 관건인데요. 전남의 경우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신안군은 국고인 교부세가 없으면 직원들 월급도 주기가 힘든 아주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경 인프라가 다른 부분도 많이 부족한데, 국고 지원이 없다면 지금처럼 유지·보수가 아주 힘들고 또 기상관측자료 수집 시스템에 이상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수집이 전혀 되지 않을 것이 자명합니다.

관측표준화법의 제정 취지는 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서 기상재해를 경감하기 위한 것이지요?

○**기상청차장 정홍상** 예, 그렇습니다.

○**朱永順 委員**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지자체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기상청차장 정홍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주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에 위원** 한정에입니다.

윤성규 장관님, 아까 답변을 좀 해 주셨는데요. 조금 추가적으로 제가 여쭙고 싶어서……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한정에 위원** BAU 기준 4개 감축안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계속 답변을 해 주셨던 게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4개의 안이 아니라 제3의 안으로도 도출될 수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한정에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국민의견 수렴을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일정이 거의 진행이 됐고요. 이번 주에 국회 토론회가 하나 있습니다.

○**한정에 위원** 제가 이기권 장관님하고 윤성규 장관님 두 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5월 말부터 해서 6월 한 달이 메르스 사태 때문에, 온 국민이 사실은 그거 외에는 다른 거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 관심이 없는 틈을 타서서…… 원래 Post-2020 목표도 국제사회에 발표를 할 때는 9월 달에 발표를, 우리 목표치를 가지고 가겠노라고 했었지요. 8월 달까지 그야말로 의견 수렴을 해서 목표치를 맞춘 걸 가지고 가겠노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것을 일정을 바꾸서 가지고 이 정신없는 6월 달에 공청회를 12일 날 하시고 그리고 한 10일 동안 의견 수렴을 하셔서 이 달 말까지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겠다는 거거든요.

좀 너무 하신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노동부도 이 와중에 합동 경제장관 회의를 17일 날 하셔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민간업계에다 임금피크제를 어떤 방식이든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서 하게 하겠다는 그 목표를 이 6월 달에, 이 메르스 정국에, 이 혼란 상황에서 그걸 꼭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를……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저희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한정에 위원** 아니, 일단 윤 장관님께 먼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한정에 위원** 이게 원래 우리의 계획은 9월이 었습니다. 그런데 이 6월 달에 반드시 해 가지고 해야만 하는, 여론 수렴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지금의 구조적인 사회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고집하시는 이유를 하나 해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해명을 뭘 하셔도 사실은 해명이 안 되실 것 같기는 합니다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저도 외국 사절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보면 3월 달까지 내라는 외국의 주문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우리는 9월 말까지는 제출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제출 상황을 보면 주요 국가들은 6월 말이면 거의 다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출 내용 플러스 제출 시기까지 우리가 지탄을 받는 것은 너무나 부담이 간다 하는 정부 내 판단 때문에……

○**한정애 위원** 부실한 제출 내용이다, 거기에다 부실한 제출 기한까지 2개를……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니, 부실하다기보다는 우리의 산업구조라든지 또는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속도를 얼마나 우리가 낼 수 있는가 등등 여러 가지를 보고, 또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정부가 기간 중 3% GDP 성장률을 잡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상황이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한정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님, 저는 장관님의 의중이나 그거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올해 들어서 시작한 것은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정부에서 준비를 이렇게 하였고 가능한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감축 목표를 실질적으로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최소한의 의견 수렴은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간 정도는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공청회 일정도 사실은 법적 공청회,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는 공청회 공고 기간마저도 여기면서까지 공고를 하시고 공청회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달 말까지라고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결국은 의견을 들어서, 몇 명의 의견을 듣겠다는 거지요. 그렇게 들어서 목표치를 조정해서 그냥 6월 말 날짜만 맞춰서 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안타깝고 사실은 좀 가슴 아픕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6월 말이라고 하는 그 일정에 너무 엄매이실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간까지는 좀 가지시고, 그렇게 해서 6월은 넘기고, 7월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정도는 성의를 보여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정부 내에서 논의할 때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기권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한정애 위원** 삼성서울병원, 아까 존경하는 은수미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응급실에 왔던 환자를 병실로 이송해 주는, 이송요원이라고 하지요. 이송요원이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응급실에 체류했습니다. 체류했는데 삼성병원에서는 이 사람은 관리대상으로 포함하지

도 않았지요. 관리대상으로 포함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주로 삼성서울병원은 그냥 삼성서울병원의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의사, 간호사, 의료진만 중점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이 행태는 잘된 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메르스와 같은 전체적인 국가적인 사태 또 사업장 내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건강과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사안이 있을 때는 소속 사업장에 상관없이 안전상·보건상의 조치를 함께 해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렇게 맞는데 노동부도 지침을 내리실 때 보니까 소속직원들 중심으로 내리셨던데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처음 6월 5일 날 지침을 내릴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보건상의 조치를 근간으로 해서……

○**한정애 위원** 메르스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기업대응 지침이라고 하는 내려간 것은 소속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사실은 이 환자 관련해서……

6월 2일 날 증상이 발현됐는데 6월 10일까지 정상근무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10일에 확진이 된, 그 이후에 11일자로 고용노동부가 다시 문서를 하나 보냈습니다. 병원 협력업체 및 서비스업종 근로자에 대해서 확산방지를 위해서 관리 강화를 해라라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처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저희들이 했고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을 사업장 단위의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방관서를 통해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정애 위원** 근본적으로 감염병은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규직·비정규직 구별해 가면서 감염되는 것도 아니고……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신분과 상관없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정애 위원** 삼성서울병원의 조치 자체도 잘못되었지만 삼성서울병원이 잘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단하에 정부당국이 아무런 제대로 된 관리나 감독을 하지 않고 사실은 무방비 상태로 그냥 삼성서울병원이 알아서 하계끔 둔 것 자체도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거의 10여일 이상이 그냥 지나버렸고, 급기야는 삼성서울

병원을 부분적으로 폐쇄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정부당국에서, 노동부도 그렇고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사실은 다 잘못을 일 정 부분 했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신 것이었지요.

지금 노동부는 기업체 차원에서 몇 개의 사업장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 조사한 게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확진자 중에 고용보험법상 DB를 통해서 확인한 확진자는 25명이고 격리대상자는 약 427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사업장 내로 보면 사업장 내에서 이런 감염병과 관련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은 저는 보건관리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맞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사업장 중에서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사업장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행하는 기관에서 무엇을 알 수 있겠어요? 사실은 관리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냥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것과 실질적인 보건관리업무를 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앞으로는 보건관리자가……

자꾸만 일자리 만든다고 하시는데 일자리를 이런 데서 관리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건관리자가 사업장에 많이 제자리를 찾아서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 부분도 확대하겠고요,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건관리자가 없더라도 보건관리지원자제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역할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대행을 맡고 있는 대행기관이 메르스 예방 수칙 준수와 관련해서 최대한 사업장을 방문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봉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홍 위원** 환경부장관님, 탄소 절감정책, 경제 때문에 지금 뒤로 조금 물러선 것 아닙니까? 영터리로 자꾸 말씀하시면, 시인 안 하시면 결국 답변하기만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그런 데 죽 보면……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시나리오는 선택지 4개 중 하나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중에서 선택이 될지 아니면 다른 또 어떤 것이 선택이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봉홍 위원** 다음 국제회의 때 우리 대통령이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지금? 망신당할 텐데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나름대로 저희들이 공정하고 의욕적으로 했다 하는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국제사회에 대응할 것입니다.

○**최봉홍 위원** 저는 볼 때 오히려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뒤로 물러섰다 하는 것을 발표하는 것이 역측을 안 자아내고 더 좋지 싶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최종안이 결정되면 아마 필요하면 그런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최봉홍 위원** 노동부장관님, 100인 이상 사업장 3000여 곳 단체협약 지금 수거해서 조사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최봉홍 위원** 목적이 뭐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소위 기업의 인사·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한 사항은 없는 것인지 또 세습조항처럼 위법한 사항이 없는 것인지를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최봉홍 위원** 옛말에 갓 집에 가 가지고 하지 말고, 오비이락이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 시끄러운 과정에 그거 뭐 하려 합니까? 가만히 놔둬도 근로자는 자기끼리 전부 다 잘 알고 있는데, 공연히 오해를 사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및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한 노조 동의 없는 임금 피크제 일방 도입, 정부는 충분히 협상을 해 가지고 합의를 해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그렇게 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항의서한 오늘 보셨습니까?

이게 노동자단체에서 나온 무능한 정부·여당 정신 차리라고 하는 식으로 쓴 항의서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그러한 사항들이 다 수록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을 가지고 노동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일반해고 기준·절차, 가이드라인은 사용자에게 '이러한 절차와 기준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하세요' 하고 통상해고를 활성화하라는 메시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민들은 수용합니다, 이대로. 모든 노동자들도 이것을 수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협상에서 합의해 가지고 서로가, 지금 국가적으로 봐 가지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니 뭐니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노사가 전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갖다 붙이다 보니까 세상이 더 시끄러워집니다. 이렇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사용자 편에서서 기재부의 행동대장 한다' 이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임금피크제 관련해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고령자고용촉진법을 하면서 임금체계 개선 등을 하도록 해서 거기에는 당연히 임금피크제가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또 금년에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도 노사 양측이 임금피크제를 하는 게 맞다라고 공감한 사항입니다.

다만 대타협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임금피크제는 단위사업장에서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고 최대한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판례에 의해서 보면 그러면 끝까지 노조가 동의를 안 했을 때 도입 안 하는 게 맞느냐, 사회통념상 주변업체에서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고, 정년 60세로 하는 것이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 취지나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변경 취지나 법원 판결에 맞다고 봤을 때 극단적인 경우에 있어서 이것은 소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이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외가 전부인 것처럼 자꾸 호도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강조하고……

○최봉홍 위원 하여튼 그 내용은 현재 노사 간에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전체가 다 알고 있고, 지금 반 년 넘게 서로 협상해 오다가 깨지다 보니까, 어느 게 합의되고 어느 선까지 된다는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에 계획을 발표해 가지고 불 지르는 식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달리는 말에 더 채찍질 하는 그런 결과가 온단

말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도 노사단체 그런 부분이 우리가 노사정 간에 공감도 했고 입법 취지도 그런 취지를 담았기 때문에 충분히 현장에서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자라고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하는데 단체협약 수거해 나가고 그것 조사해 가지고 3000개 해서 바꾼다고 이렇게 나오면 노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점을 신중하게 대해 주시고, 17일 날 발표하는 문제 유보해 주는 것이 좋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17일 날을 저희들이 얘기했던 부분도 대부분은 소위 가장 키포인트는 격차 해소에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협력업체, 그리고 이 문제는 지난번에 대타협할 때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마는 단계별로 나누어서 하겠다고 했고 그 일관성 속에서 꾸준히 하고 있고, 오히려 속도가 조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정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월에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노사와 협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협상의 폭을 넓혀 가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최봉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최봉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의원 장하나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6월 9일 전후로 해서 저는 매일경제하고 몇몇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장관님 인터뷰 기사였어요.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에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발표하시는 게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반기의 경제 운영 정책에……

지난번 4월에 대타협이 되지 않았을 때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는 청년과 장년을 어떻게 상생하게 할 것인가, 정부가 뭘 지원하고 노사가 어떻게 이 부분을 협상하면서 주의하면서

협의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장하나 위원** 그러면 발표하는 게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무엇이지요? 이름은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정부의 정책방향입니다.

○**장하나 위원** 정책방향을 내일모레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1차 정책방향을 발표하려고 그립니다.

○**장하나 위원** 하시긴 하시네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그 내용이 뭔지 미리 알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자료를 국회에 안 주세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지금도 예를 들면 공정거래랄지 원하도급 간 소위 동반성장지수 산정 문제랄지 몇 부분을 관계부처 간에 조율하고 있고요, 최소한 발표 전에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내일모레 발표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시점도 연기도 가능하십니까? 상황이 어떠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시점을 꼭 연기해야 될 사정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하나 위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국회에 아직 보고할 내용은 아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여러 단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쟁점이 있는 부분은 노사와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할 일입니다.

○**장하나 위원** 내용을 보니까 임금피크제 대상자 1명당 청년 신규채용자 1명을 붙여서 한 쌍이 됐을 때 최대 연 1080만 원까지 임금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상생고용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때 청년 신규채용자가 임금피크제 때문에 추가로 신규 채용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기술적인 문제는 앞으로 다듬어 가려고 합니다.

○**장하나 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이 고려가 안 됐는데 일단 1000만 원이라고 막대한 지원금을 책정을 이미 하셨네요, 방법은 불분명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지원 수준은 협의했습니다.

○**장하나 위원** 늘 이렇게 고용노동부는 순서가 남득이 안 되게끔 일을 처리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만큼 청년 문제가 절박하기 때문에……

○**장하나 위원** 청년 문제가 심각한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정말 안 좋은 표현이지만 정부가 청년의 문제를 팔아먹고 이러한 기업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 가장 우려스러워 하는 의원이 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고령자고용촉진법을 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라고 봤고 거기에서 노사정 간에 합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연속선상에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하나 위원** 이 얘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하셨는데, 청년 고용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요. 여기에 따라서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장하나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의 정규직 아니면 장년노동자들이 청년노동자들하고 일자리를 나누어야 된다 이런 발상 이전에 사실 노사정 3주체 중에 왜 사용자 측은 계속 고통 분담을 안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들을 늘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노노 간의 고통 분담,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가장 고통을 분담해야 될 1순위는 사용자 측 아니겠어요? 왜 노동자가 먼저 분담을 해야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저희들이 대타협을 할 때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임금피크제로 고용근로자들이 분담한 만큼 그 이상의 재원을 기업들도 내고 거기에……

○**장하나 위원** 그러니까 그 방안은 뭐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이번에 하이닉스처럼 근로자들이 예를 들어서 30억을 절감해서 낸다라면 회사도 그 이상의 재원을 투자하도록 한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그 투자 부분이 청년 채용이랄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으로 쓰여진다면 거기에 걸맞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장하나 위원** 아니, 거기에 근로자들이 30억을

뭐 이렇게 줄였다는 단서조건을 달기 이전에 사용자들은 어떻게 고통 분담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제시하는 게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근로자들의 임금이 절약된 그 이상의 재원을 사용주가 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장하나 위원** 그러니까 보고 있는 것 말고 그런 게 이번에 뭐라 그럴까, 가이드라인이든 아까 정부의 정책방향에 들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임금피크제 그 재원만 가지고 청년을 채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주가 거기에 해당되는 급여를 낼 때는 임금피크제로 절약된 것 플러스 알파가 더 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장하나 위원** 그렇게 보시는 것 말고 사용자 측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안이 없으신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채용 자체가……

○**장하나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임금피크……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채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 임금피크제로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재원이 들어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자, 그러면 채용으로 넘어갈게요. 2009년, 2010년쯤에 흑시 대출 초임 연봉을 삭감했던 것 기억을 하시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때 사업장별로 일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있었던 것으로 저는……

○**장하나 위원**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장하나 위원** 그때도 금융위기 극복하고 또 대출 초임 삭감을 통해서 청년고용을 늘린다 이런 취지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것은 기획재정부의 자료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09년에 1만여 명, 2010년에 거의 1만 5000여 명 이렇게 2만 5000명이 이 대출 초임 삭감 정책으로 채용이 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2만 5000명 중에 정규직 전환 인원이 903명이었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야심차게 말씀하신 임금피크제에서 그래서 임금피크제 1명당 청년고용 1명 하면 심지어 1000만 원씩이나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년노동자들이 어떻게 좋

은 일자리 그리고 지속적인 일자리로 갈지는 담보하실 수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하나 위원** 아, 무기계약직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장하나 위원** 지금 그 자료에서도 ‘별도 직권 검토’라고 돼 있었는데 이게 무기계약직을 말씀하시는 거였고……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모든 공공기관은 정원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절약된 재원을 가지고 청년을 채용했으면 별도의 정원으로 아예 인정을 해주려고 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하나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별도의 정원은 너무 좋은데요. ‘별도 직권’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걱정이 되고, 무기계약직이라고 하신 것 보니까 역시 정규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요, 법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상으로 유기와 무기만 의미를 한 겁니다.

○**장하나 위원** 지금 시간이 없는데……

제가 환경부장관님한테 질의할 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번에 메르스가 인수 공통 질환이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장하나 위원** 지금 야생동물 방역체계가 엉망이다가 아니라 아예 구멍이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농림부에서 가축만 다루고 있고, 야생동물은 환경부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아예 되고 있지 않지요.

지난 5년간 야생동물 4만 6000여 마리가 들어왔는데 이게 다 눈으로만 이렇게 심사…… 임상심사라는 게 눈으로만 하는 거고요. 정밀검사를 받은 것은 그중에 단 2마리입니다.

4만 6000여 마리 중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통령께 기증한 따오기 2마리만 AI 때문에 정밀검

사를 실시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야생동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도 검역이 눈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즉 안 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라든가 국민 여러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부처가 하나도 없고요.

더 놀라운 것은 양서·파충류는 아예 눈으로만 하는 검사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포유류하고 조류는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파충류나 양서류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래서 지난 5년간 양서·파충류 227만여 마리가 검역 없이 수입됐습니다.

미국에서는 2007년에 양서·파충류에 의한 살모넬라 집단발병 사례, 특히 5세 미만 영유아는 살모넬라균에 어른보다 5배 이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감합니다. 그래서 영유아 사망사고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거북이라든가 도마뱀이라든가 애완용으로 많이 키우고 방과후교실이나 학교, 영유아들이 가는 생태체험교실에서 다 만져보게끔 하고 있는데 검역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엄마들이 알면 정말 충격받고 기절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환경부가 더 이상 ‘검역은 농식품부 소관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시스템 즉시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요. 메르스 사태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리고 있거든요.

환경부장관님, 그 조치를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 3월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야생동물 질병관리 관련 규정들이 강화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는 질병관리·야생동물보건연구원 이런 것들이 아직 건설 초기 단계에 있고 그래서 곧바로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여건이 안 돼 있는데

요.

어쨌든 저희들이 일본이라든지 또는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서 이런 양서류·파충류를 어떻게 하는지 좀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대안을 필요하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미국에서는 거북이 자격증이 없으면 애완용으로 잘 기르지도 못하게 할 정도입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빨리 파악하시고 조치를 빨리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주** 장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순서로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이인영 위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이유 중에 꽤 큰 것으로 청년일자리 문제 말씀하시는 거 잦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이인영 위원** 그런데 일자리와 관련해서요, 기본정책이 어떻게 할 때 일자리가 많이 생기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이인영 위원** 예를 들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을 때 생기는 일자리가 제일 크면 그것부터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노동시간피크제를 도입했을 때 생기는 일자리가 더 크다 그러면 그것부터 해야 되겠지요.

또 그것도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유경제, 상생경제 이런 것이 더 크다고 그러면 그것부터 해야 되겠지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이것들 과감하게 풀어내는 정책적 유도를 할 때 더 크다’ 그러면 그것부터 해야 되겠지요.

실제로 비중이 어떤 것이 큰가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하시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임금피크하고 일자리 창출 문제하고,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 문제하고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보이는지…… 그것 저는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검토가 안 돼 있는 상태 속에서 그냥그냥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가령 노동시간을 60시간인데 50시간으로 줄인다 그러면 전체 일자리의 5분의 1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800만 개 기준으로 하면 한 300만 개 정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장관님 말씀하셨던 6만 개, 13만 개 이런 것은 정말 새발의 피거든요. 그런 크게 생기는 문제부터 더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다음에 '사내유보금 같은 게 700조다, 이게 풀어진다면' 그러면 140만 개가 생겨요. 그리고 지금 사내유보금이 500조다 그러면 그게 예를 들면 100만 개가 생겨요. 이것은 연봉을 5000만 원 기준으로 할 때 그렇게 돼요. 3000만 원으로 하면 150만 개, 200만 개 이렇게씩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게 더 많이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것을 우선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데 전력을 다 하는 게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비중에서도 잘못 잡고 계시고 선후의 문제에 있어서도 잘못하고 계신다고 봐요.

기업의 투자라든가 그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높이는 노력들이 선행되고 혹은 대기업이 중소기업하고 공생경제, 공유경제, 상생경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여력을 만드는 것들이 선행되고 진행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노동자들에게는 임금피크제라는 것이 자율적인 영역인데 강제적인 영역으로 밀어붙이는 영역으로 이렇게 오고……

심지어는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 하면 '장년과 청년의 상생노동' 이런 말씀 하시지만 사실은 이게 싸움 붙이는 거잖아요. 장년층의 임금피크제가 있지 않으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안 생기는 것처럼 해 가지고 싸움 붙이는 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저는 선후에서도 잘못됐고, 특히 방식에 있어서 임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일정한 자율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다른 영역에서는 시장에 개입 안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왜 이런 영역에서는 그렇게 가혹하게 개입하시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비중이나 선호 문제나 아니면 방식의 문제나 이런 데에서 지금 전혀 저는 객관적인 타당성을 가지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일부분은 있어요. 일부분은 영향력이 있고 연관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 일부분

의 비중에 비추어서는 너무 강력한 정치적인 드라이브를 거시는 것으로 보인다 이거지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하고 상생 문제 이런 것들도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그게 훨씬 크게 먼저 선행이 돼야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사정 대타협을 할 때 65개 조항으로 그게 대분류 돼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사실 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면 경영계가 해 줘야 될 부분 그다음에 정부가 해 줘야 될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노동계가 좀 앞장서서 양보, '양보'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법대로 좀 하자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주 소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사정 대타협안에도 지금 위원님이 강조하시는 소위 일자리의 본질과 연관된 문제, 근로시간 단축…… 지금 저희들도 가급적 6월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법이 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포함해서 일찍 통과되라고 요청하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또 노사정 간의 합의도……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요, 제 시간을 이렇게 쓰시려고……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하라는 말이에요, 정부 차원에서. 그게 그리고 실제로 엄청난 일자리를 창출하는 영역이고…… 그것을 안 하고 노동자들에게 뺏어 가지고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주려고 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왜 그렇게 큰 비중을 두시느냐 이거예요.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제라든가 아니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투자나 일자리로 푸는 거라든가 이런 게 훨씬 큰 영역인데 그것은 먼저 안 하고, 임금피크라는 건 제가 볼 때는 한 10분의 1이나 50분의 1도 안 될 텐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 볼게요.

임금피크제나 노동시간피크제나 아니면 대기업·중소기업의 공유경제 시스템이나 아니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느 게 고용창출 효과가 큰지 이런 것 연구 검토

토한 것 자료 있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이인영 위원 기본이 안 됐잖아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 속에서 우선 밀어붙이는 것 아니에요, 지금?

환경부장관님한테 여쭙 볼게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답을 드리고…… 먼저 말씀하시지요. 제가 나중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니, 질문을 아직 안 주셨으니깐……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 시간 안에 질문하시라고……

○이인영 위원 답변 지금 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내유보금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저는 상품시장의 공정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아야 그 재원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향상되고 그래야 청년들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인영 위원 사내유보금하고 대중소 간의 상생경제하고는 다른 얘기지 그게 어떻게 같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저희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 그다음에 대중소 협력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 부분이 대타협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우선순위로 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근로시간 단축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함께 되었으면 합니다. 임금피크제만 강조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강조돼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영 위원 지난번에도 납품단가 말씀하셨는데 그것 맞습니다. 그것 맞는데 그것은 대중소기업의 상생경제 시스템으로 하는 것 적어도 큰 줄기의 다섯 가지 중에 1개에 불과해요.

환경부장관님, 여쭙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연구결과 나왔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지난 6월 5일 날 저희가 최종 보고서를 받았습시다.

○이인영 위원 최종 보고서는 공유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요약본만 주셨는데.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는데요, 저도 풀 텍스트를 받았는지 아니면 요약본을 받았는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이인영 위원 풀 텍스트를 지금 받아 보지 않은 상태라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두 가지만 우선 질문해 볼 텐데요.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약식 평가를 도입하면 그다음에 본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제가 짐작컨대 본 평가 없이 약식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인영 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나 계량화나 수치로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 부분은 본 평가를 하는 것 같고 정성적인, 그냥 말로써 평가하는 부분은 약식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냐 이게 국내외 상황을 종합한 연구자들의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것은 정성적 평가의 영역을 개선하거나 보완하거나 더 발전시켜야 할 문제지 그것을 약식으로 끝낼 문제는 아니잖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여러 가지……

○이인영 위원 하여간 제 논란은…… 다시 본 보고서를 보면서 좀 더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을 현행 94개에서 152개로 확대하는 것은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환경부의 역할을 자문 역할로 하고 계획 수립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런 과정에서 사실상 환경부의 어떤 권한이나 기능 이런 것들이 가벼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나라마다 여건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 미국, 독일, 네덜란드, 영국의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환경 부서에서는 자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선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의견을 주면 반드시 그것을 따르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나친 면이 있다 하는 지적이지요. 그런데……

○이인영 위원 우리가 연구한 만큼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그러면 환경을 잘 지키는 이런 사고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래서 연구자들은 그렇게 환경부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측면도 있고 또 강화시키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인영 위원 그것을 검토해 보셨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본 보고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논란을 벌이는 게 부적절해서 지금 사실만 확인하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는 직감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스탠더드는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제가 보충질의 안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1분만 더 하세요.

○이인영 위원 지난번에 국회 본회의장에 갔더니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왔어요.

요지는 이런 겁니다. 그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건데, 그것을 환경부하고 산업부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환노위에 의견을 묻지 않고 그냥 진행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단 그것은 국회법에도 안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환경부가 나름대로 이것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그것을 산업부하고 이런 식으로 합의해 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합의를 해 주신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도 실무자들한테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국회 내에서 절차는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저희가 정부 내에서 검토한 과정을 보니까 우리가 5000평방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게 이미 우리 환경영향평가 하위법령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저쪽 산업부 쪽에서 의원발의한 부분에 그런 5000평방미터 미만이라고 하는 수치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 실무자 차원에서는 같은 취지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인영 위원 만약에 6만 제곱이 넘는 상태 속에서도……

○권성동 위원 5만……

○이인영 위원 6만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주 5만이라고 그랬어.

○이인영 위원 6만㎡가 넘거나 1만㎡가 넘는 경우에도……

○권성동 위원 5000이야.

○이인영 위원 아니, 아니요, 제 얘기가 맞아요.

그런 경우에도, 개발행위의 면적이 5000㎡ 미만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요지는 이거예요.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6만이나 1만㎡ 이하일 경우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행령 조항이 있는데 그것에 맞추어서 ‘5000㎡ 이하’ 하고, 법률용어도 새로운 용어예요, 이게 어디에 있지도 않은 용어 같은데, ‘개발행위의 면적이’, 계획 면적이 아니라 개발행위의 면적이 5000㎡ 이하인 경우에…… 지금 장관님 말씀은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건데, 제 얘기는 그것도 문제지만 6만이나 1만이 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의 면적이 5000일 때, 개발행위의 면적이라고 그럴 때는 생략할 수 있는 거냐고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냐고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합의해 준 거냐고.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특구 지정의 면적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특구 지정은 사실 어떤 것은 8000, 88만, 몇백만㎡까지 특구 지정이 되는 게 있고요. 그중에서 실제 개발이 되는 면적, 건물이 지어진다는가 토지 계획 변형이 일어나는 그 면적을 기준으로 5000㎡ 미만인 경우에 그 경우에는 전략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1만㎡나 6만㎡가 넘는 개발계획 지역에서도 실제로 개발행위 면적이 5000㎡ 이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안 하고 그냥 임의로 지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계획상 5000㎡ 이상을 계획한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미 계획에 들어 있고, 만약 계획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실제

개발에서 말씀하신 대로 1만, 6만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인영 위원 아니, 개발행위 면적이 다 6만, 1만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1만㎡나 6만㎡가 넘으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지 않아요, 계획에서?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 그렇게 넘는 면적이라 하더라도 그 내부에 실제로 개발행위 면적이 5000㎡ 이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그 안에서 안 받아도 되느냐 이 얘기예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이인영 위원 그리고 합의를 해 준 거예요, 안 해 준 거예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그 당시 실무적으로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이인영 위원 괜찮다고?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예.

○이인영 위원 장관님,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본회의장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보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외적인 규정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규모 여부는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위원님 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고……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산업부 소관 법률이 아니라 환경부 소관 법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한쪽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위원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맞고…… 알았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물론 특례법이기에 때문에, 다른 법에도 그런 조항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많을수록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이인영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영주 이인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권성동 위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축소하는 것은 맞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2020년 것을 지금 정확히 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목표를 약화시켰다 이렇게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4개의 시나리오를 2030년까지 지금부터 연장선상에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2020년 목표는 약화될 수 있는 소지가 높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러니까 말을 빙빙 돌리지 마시고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는 게 저는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이런 목표를 세웠다가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여건이 안 좋고 또 수출도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고, 지금 상황에서 과거에 설정하였던 목표달성을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나면 경기에 주름살이 간다, 그러니 소위 말하는 산업부나 기재부 등 경제부처에서 과거의 그런 목표를 좀 더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치열한 논쟁 끝에 환경부는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최종 안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4개를 공론에 붙이자라고 하는 결정은……

○권성동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렇게 흘러갈 것 아니에요?

또 목표라는 것이 여건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처음 목표 수립할 때는 이러이러한 여건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의욕적으로 했지만 또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운 거예요. 고용지수도 낮고 수출도 잘 안 되고 세계 국제경쟁도 점점 심해지고, 이런 차원에서 과연 목표달성 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냐, 조금 늦추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판단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이 환경부의 책임을 자꾸 거론하니깐 장관님 입장에서는 이렇게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솔직히 까놓고 보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좀 더 솔직하게 장관님께서 답변하고 ‘불가피했다, 역부족이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결정을 하는데 환경부 의사가 매번 관철되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서로 조정하고 타협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 사안에 있어서는 정부 입장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일개 개별 부처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적으로도 이게 검증이 되는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검증이 되기 때문에 안을 가지고 개별 부처별로 얘기 나오면 국제적으로도 자칫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알겠습니다.
고용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권성동 위원** 지금의 화두는 고용이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특히 청년고용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권성동 위원** 완전히 지금 절벽이 돼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저도 어른의 한 사람으로 또 기득권층의 한 사람으로 청년들의 고용 문제만 들여다보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아마 우리 장관님은 더 가슴이 답답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고용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한꺼번에 다 써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고용 확대를 위해서 뭐가 고쳐졌으면, 제도적으로 고쳐 주면 장관 입장에서 확실하게 고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노동시장 내와 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청년고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위원**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면 더 효과가 있으리라, 저는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근로시간 단축도 아마 고용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임금피크제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도 도움이 될 것이고 해서, 뭐가 우선순위냐를 떠나서 한꺼번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나는 잘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 부분도 가급적 저희가, 기업주 부담은 좀 늘어나기는 하지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통합하고, 다만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노사정 공감을 이뤘기 때문에 가급적 6월 국회에 처리됐으면 바라고요.

임금피크제도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년연장을 할 때 이 임금피크제 때문에……

○**권성동 위원** 전의 속기록을 다 읽어 봤는데……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들어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속기록을 다 읽어 봤는데 그 당시에 임금체계 개편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규정해 가지고 임금피크제와 연결은 안 시켰지만 ‘임금체계 개편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들어간다’라고 당시 김성태 소위원장이 소위원회 회의 하면서도 여야 위원들한테 확인을 했고……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확인을 했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다음에 환노위 전체위에서도 여야 위원들한테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의의가 없었거든요. 그럼 이것은 법률사항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노사 간에 충분히 협의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도록 노도 노력해야 되고 사도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 임금피크제 도입한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기업들의 그런 룰에 따라서 뭐 56세부터 어떻게, 57세부터 어떻게, 연장되는 만큼 그다음에 감소폭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게 합리적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용노동부가 행정 지도를 잘 하고 사 측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게끔 지도를 잘 해 주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금피크제 도입은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법에 의결된 사항이기도 하고 또 달리 말씀하신 대로 청년고용과 본인들의,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절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위 사업장에서 지금 막 임금교섭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어떤 사업장에 도입하고 어떤 유형으로 하고 있는지를 컨설팅도 하고 또 사회 전체 분위기를 이렇게 잡아 줌으로써 노사가 빠

른 시일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매우 소중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권성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보충질의, 위원님 두 분 신청하셨는데요. 은수미 위원님하고 장하나 위원님 두 분 신청하셨습니다.

5분씩 질의 드리겠습니다.

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3분 주고 2분을 연장해 주어야지 5분 주면……

○위원장 김영주 추가질의 안 드립니다. 5분 하세요.

○은수미 위원 고용부장관께서는 모르시니까 얘기를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제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그 자료 관련해서 임금피크제 저희들이 사업장 실태조사할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는 9.9%고 그다음에 300인 이상은 23.2%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임피제 통계를 낼 때도 그렇게 쪽 하고 있고요.

여기에 썼던 통계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분석을 하려고……

○은수미 위원 아니요, 또 장난치지 마시고요. 보도자료 1쪽 보십시오. ‘조사 대상 전체 사업장의 9.4%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 비율이 13.4%로 300인 미만 사업장 7.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돼 있어서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요, 그러니까……

○은수미 위원 이걸 그대로 받아쓰신 거라서 더 이상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요, 그래서 이 대상하고 아까 제가……

○은수미 위원 예, 단위가 다르다는 거 알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대상이 다르다는 거를 말씀……

○은수미 위원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국장님 누구세요? 아니요, 지금 해명하실, 지금 저희 시간 없어요. 이거 왜 이런 짓을 하셨는지 저희 의원실

에 해명을 하세요. 그리고 양 데이터까지 다 가져오십시오. 제가 DB까지 다 검토하겠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데이터 드리겠고요.

○은수미 위원 이걸 같은 임금피크제 보도자료로, 고령사회인력정책과에서 같은 분이 보도자료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신문은 13.4%로 다 받았어. 그러고서는 입 짝 썼었지요. 어쨌든 그래서, 들어가시고요. 이걸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 위원님 10초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10초만……

○은수미 위원 아니요, 나중에…… 아니, 오해 그런 건 나중에 의원실로 와서 고령국장님이 직접 해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되겠지요?

그리고요 두 번째, 제가 질의를……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그렇게 뺐다고요. 그렇게 뺐고요.

그다음에 지금 결과는 이런 거잖아요. 2014년 고용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 50.5%가 정년제를 도입을 했어요, 60세 정년을. 이게 조사 결과예요.

두 번째, 그런데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은 9.9%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60세 정년을 도입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임금피크제에 목을 맬까? 이게 이상하거든요. 마치 정년제 준비가 안 된 것처럼.

그래서 우선 고영선 차관님이 주재하신 6월 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KT의 사례를 하셨거든요. 고 차관님, 보십시오. 황창규 회장께서 퇴직을 하시면서 5억 1000만 원을 가져가셨는데 이 KT가 경영적자율이 당시 1조 1418억이었고 2014년 8300여 명을 명예퇴직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전에도 KT가 어떤 짓을 했냐면 저거까지 포함해서 제 계산으로, 정확한 기억이 안 나요. 3만 5000명 정도를 자른 회사예요. 아주 유명한 정리해고, 해고 기업이에요.

그런데 고영선 차관이 주관하신 회의에서 KT를 아주 대표적인 새로운 임금피크제 유형으로 하시면 국회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면 이런 거지요. 25세 청년이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하잖아요. 10년 후 35세까지 버티는 사람이 100명 중에 20명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장기근속자 비중이 10년 이상이 20%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5세에는 80명이 잘려. 그러면 나머지 20명 중에 청년이 55세든 56세든 하여튼 60세든까지 가는 비

중이 13%는 이 중에, 지금 이것도 고용부 자료입니다. 13%는 정리해고든 명예퇴직이든 다 잘리고 나머지 7%만 남아요. 그러니까 저런 KT 같은 경우는 다 자르고 적자하고 그래도 꿀떡 먹고 남은 사람들, 즉 7%에 해당하는 사람들, 전체 노동자의 7%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임금까지 깎는 기업을 새로운 임금피크제 유형으로 주목받고 있는 KT 사례 발표도 있었다라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어쨌든 주재하신 회의……

그래서 저희한테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오해가 있어서 KT를 왜 선택을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KT 말고도 또 있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 참여했던 기업들 보면 좀 희한한 기업들이 몇 개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KT와 같은, 제가 보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쁜 기업을 왜 하셨는지 이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1분만 더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임금피크제에 합의한 이유는, 임금피크제가 아니라 임금체계 등의 개편을 의무화한 이유는 정년제의 연착륙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도 고용부는 저런 자료를, 정년제가 이미 많이 도입됐다라는 자료 같은 것을 저희한테 준 적이 없어요. 이제야 찾으니까 그게 나타난, 그래도 연착륙이 이유였어요. 그런데 이걸 고용부가 갑자기 청년일자리니 뭐니 뭐니 하면서 팔 비틀기를 하고, 그래서 근로자들한테는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요. 하지만 기업은 실질적인 피해가 전혀 없어요.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것도 나중에 대답을 해주세요. 기업에게 노동자만큼 실질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제도, 예를 들어서 최고임금제의 도입, 법인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지요? 분리과세, 뭐라도 하나 있는 게 있으면 고용부에서 지금 제안해 주세요. 자제하라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유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업장의 정년 평균을 따져 보면 단체협약에 들어 있는 정년이 58세를 넘습니다. 59세 가까이 되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자기 직장을 떠나는 평균 연령이 53세입니다. 그래서 정년을 법으로 60세를 보장해도 현재의 상태로 가면 장기근속 근로자들이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으로 직장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정년 60세로 법을 보장한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금체계도 고치고 임금피크제도 하자라는 게 기본목적이라고 봅니다.

더불어서 또 이것이 연장되면 청년의 어려움도 있으니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서 청년도 채용하자는 두 가지 목적이 같이 입법에 담겨져 있고 이 부분이 같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은수미 위원 저희가 언제 청년 문제를 입법에 담았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이, 저희들이 그거는 나중에 노사정 협의할 때 그 문제를 같이 협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은수미 위원 그것은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언제 입법에 담았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임금피크……

○은수미 위원 정년연장제의 연착륙을 위해서 대폭적인 양보를 한 거예요. 그걸 제멋대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지요, 국회의 입법취지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속기록 어디에 청년 일자리 문제가 있는지 가져오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피크제를 한다는 거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도 임금체계 개편이 들어 있고 그 취지는 일단 재직근로자의 고용에 60세까지 가자는 의미가 일차적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부가적으로 청년들의 고용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소하자라는 게 노사정 간에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라는 겁니다.

○은수미 위원 아니, 저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김영주 자, 은수미 위원님……

○은수미 위원 입법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주 은수미 위원님!

○은수미 위원 입법취지를 부가적이니 뭐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라고요.

○위원장 김영주 지금 고용노동부장관님, 그 취지에 대해서 은수미 의원실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토론……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리고 말씀하신 통계 부분은 다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통계를 두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장년들이 실제 늦게까지 일할 수 있고 청년들이 더 늘어났느냐를 분석한 통계가 하나 있고, 사업자 실태조사에서 법정통계로 임피제 도입 여부만을 확인한 통계가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얘기한 23.2% 그다음에 전체 사업장 9.9%는 사업자 실태조사에서 나온 부분이고 지금 신문에 나온 저 부분은 약 칠천몇 개의 소위 효과를 분석한 통계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300인 이하……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사업체 노동력조사는요 임금피크제 단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고용부장관님께서 설문지를 한번 보세요. 그거로도 굉장히 충분했는데, 제가 어쨌든 그건 인력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 부분은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은수미 위원 그거로도 충분히 했고 23.2%임이 분명했는데도……

○위원장 김영주 은수미 위원님, 은수미 위원님!

○은수미 위원 13.4% 자료를 제시해서……

○위원장 김영주 은수미 위원님!

○은수미 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위원장 김영주 굉장히 계속 지금……

○은수미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영주 지금 토론 장소가 아니고요. 위원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야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방에 찾아와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도……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장관님께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질의시간이 끝나면 시간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그리고 김용남 위원님 의사진

행발언 하십시오.

○김용남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느끼는 것이고 또 법안소위를 할 때도 느끼는 것입니다만, 저는 국회 등원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품격이고 그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말은 그 기관의 어떤 수준이나 품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특정 사건이나 아니면 특정 위원을 제가 지목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 환노위 전체회의나 소위에서 이루어지는 말을 보면 좀 민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주신 두 부처의 장관님 또 차관님 또 기상청에서도 나와 주셨습니다만 한 부처를 대표하는 장관이고 국무위원으로서 활동하고 그 뒤에는 지금 각 실국장 또 많은 분들이 배석을 해 주셨는데 말의 표현이 좀 지나친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회성의 어떤 지적이나 이런 것으로 지나가는 것보다는 환노위 전체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가 좀 국회 또 상임위의 품격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자정결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그냥 개인이라도 물론 문제고 한 중앙부처를 대표하는 분들을 모셔 놓고 아무리 국회라고 하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정말 아이들에게도 쓰지 말아야 될 표현들이 간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좀 앞으로의 회의진행을 위해서 스스로의 자정결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미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예, 간단하게 은수미 위원님.

○은수미 위원 아니, 김용남 위원님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희 여야는 모두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다음에 행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우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용남 위원 저한테 지금 질의하시는 겁니까?

○은수미 위원 예, 보고 있고요.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김용남 위원** 속기록 한번 볼까요? 녹음해서 한번 들어 볼까요, 발언 내용을?

○**은수미 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공격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행정부를 비판하거나 견제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를 예를 들어서 타당 위원을 비판하는 그런 장으로 삼으시겠다는……

○**김용남 위원** 제가 특정 위원을 지정……

○**은수미 위원** 아니, 제가 여쭙 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주** 자, 은수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고……

○**은수미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을 그래서……

○**위원장 김영주** 그 발언에 적절치 않고 김용남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에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법안을 상정해 놓고 이 법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하는 중에 위원들의 말에 나왔는데 아까 은수미 위원께서 얘기하시면서 좀 적절치 않은 그런 용어가, 조금 저도……

○**은수미 위원** 그러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은수미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위원장 김영주** 또 상대 위원이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또 김용남 위원께서 나중에 우리가 상임위 끝난 다음에 상임위원실이나 개별로 얘기하셔도 되는데 피감기관이 다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조금씩 자제하고, 우리 위원님 나중에 그냥 위원님들 모인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주영순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하셨는데 그냥 넘어가 주시고 그냥 오늘은……

마지막으로 장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장하나 위원입니다.

환경부장관님, 아까 질의를 하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어서 하면, 장관님 말씀대로 올 3월에 야생생물 보호법 통과가 된 거고 그것도 제가 발의했던 법안입니다마는 거기에 국립야생동물보존연구원을 17년까지 설립하신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4월 환노위 회의 때도 이것을 당시는 서면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이 검역 부분에 지금 빈틈이, 그러니까 거의 구멍이고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

겠느냐 했더니 검역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와도 협의하겠다고 이런 답변을 4월에 주셨는데요. 그 사이에 협의 과정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서면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아마 저까지 보고가 되지 않은 답변이 나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장하나 위원** 그러면 그것 뒤에서 좀 확인을 하셔서, 협의하겠다고 4월에 하셨는데 지금까지 진행 과정이 어떤지 좀 알려 주시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장하나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아까 회의에 죄송스럽게도 좀 늦게 여기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다름 아니고 의령풍력발전소 건설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어르신들이 또 한 20여 분 이렇게 국회로 찾아오셔서 가지고 제가 회의시간하고 좀 겹침에도 불구하고 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태풍 매미 때문에 일가족을, 다섯 분을 한 번에 잃으셨다거나 산사태 때문에 집도 잃고 가족도 잃고 이랬던 할머니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 듣는 것을 어떻게 중단을 전혀 할 수가 없어서 좀 늦었는데, 이분들은 당시에 산림청에서 인도를 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을 뒷산이 훼손돼서 그래서 산사태 피해가 너무 컸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당시 한나라당 당대표이셨던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현장까지 찾아오셔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셨다, 그런데 왜 지금 그 약속을 어기시느냐 합니다.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 보면 주택 등 정온시설에서 1km 떨어져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의령풍력발전소는 제일 최단거리가 640여 미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협의가 되었으며 어떻게 지금 다시금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아닌지, 환경부장관님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신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파악한 바가 없는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러시지요.

이 지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입니다. 여기에도 좀 부실한 평가라는 의혹이 짙고요.

마을 분들이 이제 십몇 년 지나기는 했지만 그때 태풍 매미 때문에 온 마을이 초상이 나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오셔서 가지고 약속했는데

지금은 약속을 저버리는 주체도 대통령이시다…… 왜냐면 작년까지도 풍력발전소사업이 추진이 잘 안 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완화하라고 하면서 산림청 관련된 규제들도 풀도록 했답니다. 그게 원인이 돼서 이 풍력발전사업이 다시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재발 방지 약속을 하셨으니 이 규제 완화 부분도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우리 마을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은 하지 마셔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그렇게 간곡히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저도 오늘 마을 분들이 오셔서 가지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처음 파악했고 저도 봐야겠지만 몇 가지, 아까 1km 이내에 되어 있는데 어떻게 허가가 난 것이냐서부터 생태자연도 1등급인데 어떻게, 또 지금 산을 반쯤 깎아 가면서 풍력발전소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풍력발전 하면 대안에너지로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서 얘기를 하고 그것을 장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에서 이렇게 풍력 발전을 하면서 자연 파괴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막아야지만 우리가 풍력 발전을 더 권장도 하고 핵발전이라든가 아니면 화력발전 같은 걸 줄여 나가는 게 우리 환경부에서도 지향해야 될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안들은 장관님께서 좀 시급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만, 작년에 풍력발전지침이 일부 현실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전의 지침에 맞게 됐다면 오히려 지금보다는 더 엄하게 됐을 것 같은데, 하여튼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하나 위원** 상황을 좀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급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장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2차 보충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부와 기상청 및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마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2항까지 이상 62건의 법률안은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한 의안 중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의사일정 제62항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공청회 개최 여부는 양당 간사님과 협의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한정애 위원님, 장하나 위원님, 민현주 위원님, 은수미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또 서면질의하실 위원님……

장관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맞도록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김용남 위원님, 민현주 위원님, 이자스민 위원님, 주영순 위원님, 이인영 간사님, 은수미 위원님, 장하나 위원님, 그리고 손충덕 수석전문위원과 보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 | | | |
|-----|-----|-----|------|
| 권성동 | 김영주 | 김용남 | 문대성 |
| 민현주 | 심상정 | 양창영 | 우원식 |
| 은수미 | 이석현 | 이인영 | 이자스민 |
| 장하나 | 주영순 | 최봉홍 | 한정애 |

○출석 전문위원

| | |
|--------|-----|
| 수석전문위원 | 손충덕 |
| 전문위원 | 김양건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 | |
|-------|-----|
| 환경부장관 | 윤성규 |
|-------|-----|

함진규 의원 발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 발의)

(2015. 5. 22 안홍준 · 김기선 · 김태호 · 윤명희 · 윤영석 · 이만우 · 이채익 · 정갑윤 · 정문헌 · 함진규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26일 회부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

(2015. 5. 27 주영순 · 황주홍 · 이종훈 · 서용교 · 나성린 · 양창영 · 이완영 · 최봉홍 · 김상민 · 김종태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 발의)

(2015. 5. 27 주영순 · 황주홍 · 이종훈 · 서용교 · 나성린 · 양창영 · 이완영 · 최봉홍 · 김상민 · 김종태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8일 회부됨

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

(2015. 5. 28 양창영 · 황영철 · 최봉홍 · 권성동 · 박창식 · 이강후 · 주영순 · 정문헌 · 김정록 · 조현룡 의원 발의)

5월 29일 회부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15. 4. 24 윤관석 · 이개호 · 김우남 · 신경민 · 배재정 · 서영교 · 조정식 · 김윤덕 · 안규백 · 오영식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 발의)

(2015. 4. 24 은수미 · 김광진 · 김상희 · 민홍철 · 박남춘 · 배재정 · 우원식 · 유승희 · 이개호 · 이목희 · 이인영 · 장하나 · 정청래 · 조정식 · 한명숙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5. 4. 24 박광온 · 이원욱 · 이목희 · 김성곤 · 이개호 · 최재성 · 부좌현 · 김기식 · 황주홍 · 이춘석 · 정청래 · 유승희 · 박민수 · 배재정 · 김기준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2015. 4. 24 김희국 · 류지영 · 황주홍 · 김도읍 · 민현주 · 권은희 · 박명재 · 김상훈 · 김태호 · 서상기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2015. 4. 24 김희국 · 류지영 · 황주홍 · 김도읍 ·

민현주 · 권은희 · 박명재 · 김상훈 · 김태호 · 서상기 의원 발의)

이상 5건 4월 27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5. 4. 28 노웅래 · 이개호 · 정청래 · 황주홍 · 조정식 · 한정애 · 박남춘 · 최동익 · 부좌현 · 김광진 · 민홍철 의원 발의)

4월 29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2015. 4. 29 류지영 · 송영근 · 강석훈 · 강기윤 · 양창영 · 홍일표 · 이한성 · 유의동 · 황인자 · 장은희 의원 발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5. 4. 29 양승조 · 설훈 · 박홍근 · 박민수 · 민홍철 · 배재정 · 김상희 · 이찬열 · 이목희 · 오제세 의원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5. 4. 29 양승조 · 설훈 · 박홍근 · 박민수 · 민홍철 · 배재정 · 김상희 · 이찬열 · 이목희 · 오제세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5. 4. 29 양승조 · 설훈 · 박홍근 · 박민수 · 민홍철 · 배재정 · 김상희 · 이찬열 · 이목희 · 오제세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5. 4. 29 양승조 · 설훈 · 박홍근 · 박민수 · 민홍철 · 배재정 · 김상희 · 이찬열 · 이목희 · 오제세 의원 발의)

이상 5건 4월 30일 회부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5. 5. 1 박광온 · 김현미 · 신경민 · 이목희 · 오제세 · 박주선 · 주승용 · 한명숙 · 이찬열 · 윤호중 · 이종걸 의원 발의)

5월 4일 회부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2015. 5. 11 김현미 · 안규백 · 이인영 · 신경민 · 우원식 · 박광온 · 이목희 · 은수미 · 홍종학 · 최재성 · 장하나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15. 5. 11 이인영 · 이개호 · 조정식 · 정성호 ·

한정애 · 최민희 · 김광진 · 장하나 · 유승희 · 김성태 · 홍영표 · 김기준 · 임수경 · 김승남 · 안규백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2일 회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 발의)

(2015. 5. 14 장하나 · 권은희 · 김경협 · 김광진 · 김우남 · 김제남 · 박남춘 · 박지원 · 신경민 · 우원식 · 유성엽 · 유승희 · 이개호 · 이인영 · 전해철 · 진성준 · 최동익 · 최원식 의원 발의)

5월 15일 회부됨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5. 5. 15 황주홍 · 이개호 · 부좌현 · 조정식 · 김우남 · 홍영표 · 유성엽 · 오제세 · 김성곤 · 김태원 · 신정훈 · 이찬열 · 김동철 · 이종걸 · 한정애 의원 발의)

5월 18일 회부됨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 발의)

(2015. 5. 18 노영민 · 최규성 · 부좌현 · 윤후덕 · 홍영표 · 인재근 · 이원욱 · 오영식 · 박주선 · 우윤근 · 최민희 · 이목희 · 박완주 의원 발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2015. 5. 22 부좌현 · 노영민 · 이개호 · 김윤덕 · 김성곤 · 서기호 · 이원욱 · 정성호 · 전해철 · 황주홍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6일 회부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5. 6. 1 홍익표 · 이인영 · 김영록 · 윤후덕 · 박홍근 · 윤관석 · 김현 · 추미애 · 임수경 · 진선미 의원 발의)

6월 2일 회부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

(2015. 6. 8 이자스민 · 경대수 · 강길부 · 조명철 · 김광진 · 권은희 · 김상훈 · 양창영 · 이우현 · 정희수 의원 발의)

6월 9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5. 6. 10 박홍근 · 설 훈 · 안민석 · 이찬열 · 배재정 · 황주홍 · 김성주 · 전순옥 · 박주선 · 최재성 의원 발의)

6월 11일 회부됨

2014회계연도 결산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2015. 5. 29 정부 제출)

이상 2건 6월 1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5. 4. 27 이명수 · 이종진 · 정용기 · 정희수 · 김기선 · 함진규 · 김을동 · 김한표 · 문정림 · 이에리사 의원 발의)

4월 2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투자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2건 2015. 4. 30 정부 제출)

이상 2건 5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울릉도·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5. 5. 6 박명재 · 김승남 · 변재일 · 박범계 · 양창영 · 최봉홍 · 윤영석 · 정갑윤 · 김을동 · 이현재 · 이철우 · 박맹우 · 손인춘 · 김정록 · 이만우 · 강석훈 · 김종태 · 이이재 · 김제식 의원 발의)

5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 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2015. 5. 28 류지영 · 경대수 · 송영근 · 유의동 · 신경림 · 이철우 · 김명연 · 김진태 · 김한표 · 이한성 의원 발의)

5월 2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2건 2015. 6. 4 정부 제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

무역협정 비준동의안

(2015. 6. 5 정부 제출)

이상 3건 6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